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1. 04.

○ 목 차

| | |
|--------------------------|---|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1 |
|--------------------------|---|

참 고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 (훈령 제231호) 63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 (훈령 제241호) 113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13. 훈령 제24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업의 자율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관리어업”이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존·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
3. “민간단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지원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 한국수산회, (사)자율관리어업전국지도자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자치도, 시·군·자치구 이하 “지자체”라 한다.) 및 관련 민간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6장에 의한 육성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및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율관리어업 추진

제4조(자율관리어업 추진 방향) 정부주도의 전통적 어업관리 체제에서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 보완 단계로 발전을 유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어업인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공동체 구성원간 합의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다.
2. 정부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참여·미참여 공동체를 대상으로 행정적·재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한다.
3. 민간단체는 정부와 어업인간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여 자율관리어업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교육·홍보, 분쟁조정, 평가, 연구 등을 실시한다.

제5조(자율관리어업 대상) 자율관리어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의 어업인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선·연안 어장
2. 다수의 어선이 일정수면에서 공동으로 어획하고 있는 특정어종
3. 일정지역에 근거를 두고 유사어장에서 조업하고 있는 특정어종
4. 기타 공동의 조치가 가능한 경우

제6조(자율관리어업 주요 활동)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장관리 : 어업자원의 산란·서식장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투석·해중림·해조장 등 어장환경 개선, 바위닦기 또는 저질개선, 해적생물구제, 폐어구·자가발생 폐기물 등 수거, 어장 또는 해안가 청소 등의 활동
2. 자원관리 : 지속가능한 어업자원 관리 수준으로 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구수 축소, 그물코크기 확대, 채포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제한, 어장휴식, 생산시기 및 생산량 조절(TAC), 특정어구어법 사용 제한, 종묘(패) 방류 등의 활동
3. 경영개선 : 비용절감, 수급조절 등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공동생산·공동판매,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ON/OFF LINE 판매망 구축,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외 소득 증대 등의 활동
4. 질서유지 : 지역간·어업간 소득격차, 분쟁 등 해결을 위하여 어장감시조 운영으로 불법어업 추방, 수산관계법령 준수, 교육 참여, 선진지 견학, 지역간·어업간·공동체간 분쟁 해결 등의 활동

제7조(자율관리어업 추진 체계) 자율관리어업 추진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위원장(이하 “공동체위원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정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수립,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과 공동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업무를 수행 한다.
3. 국립수산과학원장(자원연구과장, 연구소장)은 자율관리어업 대상어장 및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결과 자문을 통해 공동체에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4. 지자체의 장은 지역협의회 운영, 공동체 선정 및 관리, 육성수면 지정 등 행정 지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지방비 확보) 및 사후관리를 수행 한다.
5. 각 광역시·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수산사무소장(또는 유사업무 수행 기관, 이하 “수산사무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공동체에 대한 전담공무원 배치 및 기술지도, 참여공동체 발굴, 교육·홍보,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 지역협의회 자문 등을 수행 한다.
6. 민간단체의 장은 공동체 실태조사, 교육·홍보, 평가, 분쟁조정 및 연구 등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 한다.

제3장 자율관리어업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제8조(시·도 지역협의회) ① 각 시·도 단위로 설치하며 협의회장은 수산담당국장이 되고 자율관리어업 담당부서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시·도 담당국장 및 과장, 수산사무소장(2~3인), 공동체 위원장 대표(3~4인), 수산연구소(담당), 지구별·업종별 수협장(3~4인)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지역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 심의, 사업실태 점검
2. 공동체 평가, 공동체 등급·우수공동체 선정 및 추천
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심의 요청한 사항 등 심의

④ 기타 협의회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9조(자율조정협의회) ① 어업인간 또는 지역간·업종간 발생하는 문제와 분쟁을 당사자간 협의와 토론에 의하여 자체 해결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조정협의회를 한국수산회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한국수산회장이 되고 한국수산회에서 사무국역할을 수행 한다.

② 구성인원은 한국수산회 전문위원, 민·관·학계 전문가, 어업인대표 등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총괄협의회(연2회)와 분과협의회(수시)로 운영하며 농식품부, 지자체, 각 시·도 수산사무소(또는 유사업무 수행기관, 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 수협, 어업인 등이 요청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기타 협의회 운영 및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공동체 평가위원회) ① 참여공동체 등급결정, 최우수공동체 선발 등을 위하여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며 위원장은 어업자원관이 되고 한국수산회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② 구성인원은 농식품부, 민간단체, 어업인 대표, 기타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관이 위촉한다.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 추천 공동체 현장 확인·검증
2. 공동체 등급결정 및 최우수공동체 선정
3. 선진공동체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선정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④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회의는 공동체 등급결정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광역시장·도지사·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우수공동체에 대해 “현지점검반”의 확인·점검 실시 후 위원회에 보고
4. 현지 확인·점검내용 등을 토대로 최우수 공동체 선정
5. 최우수공동체는 마을어업 1개소와 마을어업 이외 1개소 등 2개소 선발
6. 자율관리어업 확산 유도를 위하여 최우수공동체는 다수 시·도 소속에서 선발하며 동일 시·도 내 또는 이미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곳은 배제

⑤ 기타 회의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한다.

제11조(지도자 협의회) ① 자율관리어업 참여어업인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를 통하여 확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와 참여공동체 지도자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시·도지도자협의회 : 관내 참여공동체 지도자로 구성
2. 전국지도자협의회 : 시·도 지도자협의회장으로 구성

② 지도자협의회는 (사)자율관리어업전국지도자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한다.

제4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제12조(구성 요건) ① 자율관리어업 활동이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사유지와 사유수면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은 공동체 구성이 불가하다.

② 공동체별 최소 구성원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어업공동체 : 최소 7명 이상
2. 마을·양식·어선어업 공동체 : 최소 10명 이상
3. 복합어업 공동체 :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며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광역단위 공동체 : 어촌계나 선주협회와 같은 단체로서 단일단체로 구성된 공동체는 200명이상으로 하며 2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제13조(구성 단위) ①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 할 경우 지구별 수협, 어촌계, 마을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② 어구·어법을 중심으로 구성 할 경우 업종별수협, 어선주협회 또는 이들의 연합체로 한다.

③ 공동체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규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마을어업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2. 어선어업 : 어선어업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 단체 중심
3. 양식어업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 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하며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 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4.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을 말하며 마을어업, 어선어업, 양식어업, 복합어업을 구분하지 않음
5. 복합어업 : 마을어업에서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

제14조(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2조제1항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마을어업 공동체 : 어촌계원
2. 양식·어선어업 공동체 : 수산업법에 의거 면허·허가·등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3. 내수면어업 공동체 :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면허·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제15조(구성 절차) ① 자율관리구성원이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체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어업인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마을어업 및 복합어업 공동체 대표는 해당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사무장으로 두어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율관리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관계 어업인의 합의가 도출된 규약을 제정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 회원자격 및 권리·의무, 위원회 구성, 총회, 적용범위 등
2. 어장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 어장환경 개선, 어구·어법 제한, 생산량 조절, 자원조성 등 구체적 계획
3. 어업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일시·집중조업 완화 방안, 위반자에 대한 자체 벌금 부과·자격 및 권리제한 등
4. 기타사항 : 판매 및 유통, 투자 및 배분, 재투자 계획 등

④ 공동체의 선정, 규약변경, 선정취소 등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와 첨부서류(규약,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 한다.
2. 시장·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참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자체의견서와 수산사무소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한다.

3. 시·도지사는 제출된 참여 신청서를 시·도 지역협의회에 상정하고, 시·도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의견서와 규약의 타당성, 적법성, 관계법령 저촉 및 어업분쟁 여부 등을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공동체로 선정 한다.
4. 시·도지사는 공동체 선정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공동체와 농식품부, 수산사무소, 시·군·구, 관할 수협 등에 <별지 제2호서식>으로 통보 한다.
- ⑤ 공동체는 시·도지사로부터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는 즉시 사업계획에 따라 구체적 사업에 착수하고, 활동실적을 작업일지, 관리카드 등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산사무소 전담 공무원의 기술지도와 분기 또는 연간 사업추진현황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의 점검에 비협조 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제외 시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공동체 등록) ① 수산사무소장은 시·도지가 통보한 공동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 하고,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체를 방문하여 시·도지사가 통보한 규약과 사업내용을 확인 후 공동체현황을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기술지도 등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산사무소장은 시·도지사가 신규로 선정하여 통보된 공동체의 참여유형이 현장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정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체 선정취소) ① 시·도 지역협의회는 제1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는 신규공동체 선정대상에서 제외 하거나 기존 참여공동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해당 참여유형 공동체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구성원수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2. 참여공동체로 선정된 이후 최근 2년간 평가점수(관계기관 예비평가 합산점수)가 1,000점 만점 기준으로 계속하여 100점 미만인 경우
- ② 시·도 지역협의회는 기존 참여공동체의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공동체 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지정된 기한 내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 지역협의회는 기존 참여공동체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수산사무소, 시·군·구, 관할수협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체 규약변경) ① 위원회가 해당 공동체의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약 중 참여유형, 어장 및 자원관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 지역협의회 심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기타 내용은 공동체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역협의회가 기존 참여공동체에 대하여 규약변경을 승인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공동체와 관계기관(농식품부, 수산사무소, 시·군·구, 관할수협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참여유형 변경은 당해 연도 1/4분기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1/4분기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5장 우수공동체 선발 및 지원

제19조(활동실적 평가 및 등급부여) ① 수산사무소 및 시·도 지도자협의회에서는 별표 3의 평가메뉴얼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육성사업비 지원 실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동체등급을 부여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에서의 육성사업비는 참여공동체에 지원된 사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선진공동체(1등급) : 자립공동체 중 전체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결과 3회 이상 상위 5%이내에 포함된 공동체
2. 자립공동체(2등급)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4회 또는 6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3. 모범공동체(3등급) :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육성사업비를 2회 또는 3억원 이상 지원 받은 공동체
4. 협동공동체(4등급) : 참여 및 모범이상 등급 공동체에 속하지 아니한 공동체

5. 참여공동체(5등급) : 참여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체

제20조(우수 공동체 인센티브 부여)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 지원, 공동체 지정패 수여, 정부포상, 해외연수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추진여건 불비, 불법어업 과다, 어업권 타인지배, 행정처분, 어업분쟁, 사업비 부당수령 사례 등이 확인된 공동체는 육성사업비 지원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추천 받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하고 선정된 공동체에 대하여는 육성사업비 추가지원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①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전국적 확산을 유도 하기 위해 민간수산단체로 하여금 매년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하고 개최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자율관리어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례집과 영상물(DVD)을 제작 배포 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수산사무소 및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관리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할 수 있다.

제6장 육성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제22조(사업추진체계) ① 장관은 육성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 및 수산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는 해당 공동체위원장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한다.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한다.

⑥ 시장·군수는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사업집행지침과 이 요령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시·도지사를 거쳐 장관에게 사업정산보고를 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제23조(사업집행주체) ① 육성사업의 집행주체는 시·도지사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사업집행주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과 수산사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연구지원부서의 장과 수산사무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계획수립 및 협의) ① 공동체는 사업계획 수립시 자체 규약에 의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 어업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공동체 내 이미 실시된 사업과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된 사업계획서가 육성사업비에 의한 사업으로 적절한 가를 판단하고, 부적절할 때에는 육성사업의 목적에 알맞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공동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수산사무소장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내용) ① 육성사업비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되나, 사업집행 주체가 판단하여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사료저장시설, 간이 중간육성

- 수조, 임시축양수조, 산지 간이 위판장, 어장진입갯벌로 등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2. 쓰레기적치장, 쓰레기소각로, 폐유수거탱크, 정화처리시설, 폐각분쇄처리장, 노후어장저질개선, 어장정화, 어장관리선 등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3. 투석,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먹이공급용 해조장·해중립조성 등 자원 조성시설 및 사업
 4. 체험어장 및 낚시터조성, 공동체 특산품 개발연구, 홍보(동영상 포함), 공동체회관·컴퓨터 구입 등 교육시설, 기타 자원보호와 공동체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사업
 5.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
- ② 어선어업 공동체는 제1항에 의한 지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구실명표식 및 친환경어구 구입
 2. 어선 안전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단, 어획강도를 높일 수 있는 설비 및 장비는 제외)
 3. 어선 접안용 잔교 및 부잔교 시설
 4. 소형선박인양기 등 재해대책 시설
 5. 물량장 등 어획물 양육 편의시설
 6. 활선어 등 수산물 신선·안전 운반시설
 7. 해적생물 퇴치장비(어구 포함)
- ③ 제1항 및 제2항 사업에 부수되는 소모품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자체자금) ① 사업집행주체는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때, 공동체가 부담하여야 할 자체자금은 이를 투명성 있게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 총회 의결사항 또는 자체 자금 예치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해야 하며, 자체자금의 집행상황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자체자금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며, 자체자금에 의한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 비율에 일치시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제27조(사업수행) ① 육성사업은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가 수행한다. 다만, 공동

체가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와의 사업수행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 선정 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된 업체 등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되, 보조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④ 공동체가 직접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3항에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제정한 조합계약규정(예)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과도한 단가 이상의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사업집행주체 또는 공동체를 관할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시에는 관계공무원이 입회·지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집행주체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이 농식품부가 기 지원하고 있는 개별수산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그 단위사업의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⑦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설계서는 사업집행주체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일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사업비 집행)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는 사업집행주체의 책임 하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라 함은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자재구입비, 작업비, 감리감독비, 운송비,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하며, 토지구입비, 근저당설정비등 이에

준하는 제비용은 사업비 집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의 협력에 의하여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나 단순인건비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방지 등, 자율관리 어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구입 및 사용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체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제4항의 규정 외에 현지 확인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계약서와 공동체가 작성한 작업일지 또는 공사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 확정 하여야 한다.

⑥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비 집행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공사감독 등) ① 사업집행주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업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명하여 사업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시설사업외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주요과정별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집행주체의 업무 수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순회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예산회계법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가조사기관의 조사가격등 공신력 있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술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설계 도서를 심사하게 하고 공사를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독·감리·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 관리법」,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보고) 사업집행주체는 당해 연도의 육성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완료(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소요경비를 공정별로 명백히 한 사업 정산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의 사후관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집행주체가 행한다.

② 육성사업비로 지원된 소득원 및 시설물 또는 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당해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까지로 하되, 사업을 시행한 다음 연도부터 다음기관까지 관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차량, 장비, 기구, 자원관리선 : 5년
2. 건축물과 구축물 : 10년

③ 사업집행주체는 당해 연도 육성사업의 주요과정을 카메라,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여 그 결과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율공동체로 하여금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금지기간 등을 설정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히, 전복 치패를 방류할 경우에는 먹이생물 수용력 등을 감안하여 종패수량을 결정하고, 먹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매년 1회 이상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운영·관리 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그 결과를 정확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완료 후 익년도 부터 2년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⑦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지원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중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이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준공후 60일 이내에 공동체가 어촌계 또는 공동(체) 명의로 등록을 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⑧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 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거나 표지의 시설이 필요 없다고 사업집행주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식품부, 수산사무소,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지침) 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사업 가운데 동일연도에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있는 개별 수산사업과 유사한 사업(이하, “유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사항 외의 사업실시에 관한 규정은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로 수산종묘(패)를 매입 방류(살포)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질병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육성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유사사업 시행지침의 관련규정 중 대상사업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중 ‘방류장소’ 및 효과조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사업추진 여건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항

제33조(사업추진실태 점검) ① 장관은 필요시 시·도별 육성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결과가 우수한 시·도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하거나 다음해의 예산 등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7조제4항에 따라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대행하는 사업시행주체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사업집행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 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집행주체는 공동체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

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체에 대하여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집행주체는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어장의 위치 및 면적, 자원관리 내용, 회원 및 체험객 준수사항 등이 표시된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을 별표2에 따라 작성·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판을 설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시행세칙) 사업집행주체는 본 장의 기본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평가 및 포상 등

제36조(공동체 효과분석) 장관은 자율관리정책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향후 정책 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득조사 및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자율관리어업 유공자 포상) ① 장관은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동체위원장, 민간단체 및 지자체 관계자를 발굴하여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장관은 민간단체를 통하여 자율관리어업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을 수여 할 수 있다.

제38조(포상 특전) 장관은 제37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국내·외 자율관리어업 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전에 추진 중에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및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는 이 훈령에 의해 추진한 것으로 본다.

- ③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14년 4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제12조제2항제3호 관련)

| 공동체 구성원수 | 공동체 구성원 수중 어선어업인 참여 비중 | 어선어업 참여 인원수 (최저/최고치 기준, 반올림) |
|----------|------------------------|------------------------------|
| 10명미만 | - | 해당 안됨 |
| 20명 미만 | - | 6명 |
| 21~50명 | 25% 이상 | 5~13명 |
| 51~100명 | 20% 이상 | 10~20명 |
| 101~200명 | 15% 이상 | 15~30명 |
| 201~300명 | 15% 이상 | 30~45명 |
| 301~400명 | 15% 이상 | 45~60명 |
| 400명 이상 | 15% 이상 | 60명 |

※ 계산방식(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성원 수 × 어선어업 종사자 수 비중
 -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명 이상, 30명인 경우 8명 이상(30명×25%),
 70명인 경우 14명 이상(70명×20%), 120명인 경우 18명 이상(120명×15%)
 이 각각 어선어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별표 2]

자율관리어업 활동 안내판 작성례(제34조제3항 관련)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안내

- 자율관리어업 참여일 : 2001. 3. 1
- 참여인원 : 230명(연안자망 30척, 어업인 200명 등)
- 대상어장
 - 위치 : 00도 00군 00면 00리 지선 등
 - 면적 : 경남 제1001호, 1002호 등 2,000ha
- 주 관리대상 어종 : 불락, 꽃게, 민꽃게, 낙지, 전복, 해삼 등
- 주요활동 내용
 - 채포금지기간
 - 전복 : 9월 1일부터 ~ 11월 31일까지
 - 꽃게 : 6월 15일부터 ~ 9월 15일까지
 - 채포금지체장
 - 불락 : 20cm이상(전장), 소라 : 7cm이상(각고), 백합 : 6cm이상(각장)
 - 기타
 - 매월 10일과 25일은 바다쓰레기 청소
 - 조업시 혼획된 불가사리 및 폐어구 등은 바다에 버리지 말고 수거
 - 불법어업 발견시 관계기관 및 공동체위원장 등에게 신고
- 준수사항
 - 00자율관리어업 공동체는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하여 위 사항을 자체규약으로 정해 실천하고 있으므로, 공동체 회원은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광객 및 외부인은 관리대상어장 출입시 공동체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0. 0. 0

00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

연락처 : 051-666-0000, 011-0000-0000

* 크기 : 120cm×100cm
 높이 : 지상에서 100cm 이상
 설치장소 : 마을어귀 또는 어장 입구 등

[별표 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제19조제1항 관련)

I. 평가개요

1. 목적

- 가.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 대두
- 나.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등급부여 및 육성 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지원에 차등을 두고자 함

2. 평가대상

- 가. 전년 11월말 현재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에 대하여 전년 1. 1 ~ 12. 31까지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

3. 평가기관

- 가. 예비평가 : 지자체 수산사무소(수산사무소가 없는 시·도는 유사업무 수행 기관), 공동체 지도자 대표(시·도별 지도자협의회)
- 나. 본 평가 : 시·도지사(지역협의회) 및 농림수산식품부(평가위원회)

II. 기관별 평가내용

1. 시·도 지도자협의회 평가(예비평가)

- 가. 평가원칙 : 현장방문 없이 자체 확보 자료로 평가
 - ※ 한국수산회와 지자체 선임 수산사무소에서 상호 협조
- 나. 평가대상 : 전년도 11월말 현재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 매년 12월 초순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여 공동체 현황 통보
- 다. 평가시기 :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 라. 평가항목 : 3개 항목(참여 유형 구분 없음)
 - (1) 주관성을 전혀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단점 보완을 위해 각 항목마다 3단계로 평가대상 공동체를 강제 배분하여 배점

| 평가항목 | | 배점범위 | 배분 공동체수 (전체공동체수 대비) | 평가범위 |
|-----------|-------------------------------|---------------------------------|---------------------------------|---|
| 1 | 자율관리어업 추진 정도 | 우수(400), 양호(300), 보통(20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공동체 추진력 |
| 2 | 대외활동 및 주변 파급(광역화) 정도 | 우수(300), 양호(220), 보통(15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지도자협의회 적극참여 정도, 주변 공동체 영향, 광역화 노력도 |
| 3 |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 결속력 | 우수(300), 양호(220), 보통(15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해당 어촌사회 평판 고려, 해당공동체의 단합 정도 |
| 총점(3개 항목) | | 1,000점(100%) | 1,000점(100%) | |

마. 평가방법 :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지도자로 평가단 구성, 평가
(1) 평가위원은 관할 참여 공동체 수의 10%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지명(최소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2) 신규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양호” 점수 부여

바. 평가절차 : 지역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회 개최(1~2월) → 평가결과
시·도 통보(2. 28까지) → 전산입력 완료(3.15까지)

2. 지자체(수산사무소) 전자평가(예비평가)

가. 평가원칙 : 규약 확인 및 현장 점검은 기본

나. 평가대상 : 해당 분기말(4/4분기는 11월말) 현재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매분기 종료 때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여 공동체 현황 통보

다. 평가시기

(1) 노력도 : 분기 1회(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

(2)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라. 평가항목 : 5개 분야 22~28개 항목(5개 유형별로 구분)

| 구 분 | 마을어업 | | 양식어업 | | 어선어업 | | 내수면어업 | | 복합어업 | |
|-----|------|-------|------|-------|------|-------|-------|-------|------|-------|
| | 문항 | 평점 | 문항 | 평점 | 문항 | 평점 | 문항 | 평점 | 문항 | 평점 |
| 합 계 | 25 | 1,000 | 23 | 1,000 | 22 | 1,000 | 24 | 1,000 | 28 | 1,000 |
| 노력도 | 15 | 700 | 14 | 700 | 13 | 700 | 15 | 700 | 17 | 700 |
| 참여도 | 2 | 70 | 1 | 70 | 1 | 70 | 1 | 70 | 3 | 70 |
| 성과도 | 2 | 80 | 2 | 80 | 2 | 80 | 2 | 80 | 3 | 80 |
| 지속도 | 3 | 90 | 3 | 90 | 3 | 90 | 3 | 90 | 3 | 90 |
| 파급도 | 3 | 60 | 3 | 60 | 3 | 60 | 3 | 60 | 3 | 60 |

※ 참여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 평가 매뉴얼 참조

마. 평가방법

- (1) 세부 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
- (2) 평가항목별로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점 부여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 기본 확인사항 | 추가 확인 서류(1개 이상 확인) | 비고 |
|-----------------|---|----|
| 규약 확인 및 현장 청취조사 | ① 회의록 ② 사진 ③ 회계서류 ④ 행정관청 확인서 ⑤ 수협 확인서 ⑥ 관리카드 ⑦ 작업일지 | |

※ 추가확인서류는 평가항목별로 세부항목별 평가매뉴얼에 명시된 서류에 한해서 평가

바. 평가절차 : 평가항목별 근거서류 확보 → 분기 평가(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 → 연간 평가 완료(2. 28까지)

3. 시·도 지역협의회(본평가)

가. 평가대상

- (1) 전년도말 현재 지원(금년도 이월 지원 대상 포함)사항을 반영하여 정합 공동체 등급별로 일정비율을 대상

※ 자립공동체(100%), 모범·협동공동체(해당등급의 각 50%)

나. 평가시기 : 매년 4~5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1)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공부 확인, 시·도 지도자협의회 의견 청취 및 필요 시 현지 확인
- (2) 행정공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점수 확정(행정공부 확인 등으로 결격 사유 확인 시 점수 조정가능하며 조정사유 반드시 첨부)

라. 평가절차 :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3월) → 행정공부 확인 및 의견 청취 등 (4월) → 최종점수 결정(5월)

마. 결과조치 : 최종점수 결과 보고 및 우수공동체 추천(5월)

- (1) 우수공동체는 모범공동체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체 중에서 활동실적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를 말하며, 시·도별 1~2개 범위내에서 추천
*추천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 참조

4.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본평가)

가. 평가대상

- (1)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모범공동체 중 상위 20%이내 공동체

나. 평가시기 : 매년 6~7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1)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 실시
- (2) 점검결과에 따라 우수공동체 중 최우수공동체 선정 및 모범공동체 순위 결정(동 선정에서 제외된 공동체는 시·도지역협의회 평가점수 유지)
※ 현지점검 등 평가위원회 운영은 한국수산회가 사무국 역할 수행

라. 평가절차 :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6.15까지) → 현장 확인·검증 (6~7월) → 최종 순위 결정(7월말까지)

Ⅲ. 지자체 전자평가

1. 기본방향

가. 분기평가와 연간평가 구분

- (1) 평가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5개 분야를 분기평가(노력도)와 연간평가(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함
- (2) 분기평가는 매분기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함(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 (3) 연간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4/4분기 평가시 함께 평가하되, 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1년간(1. 1 ~ 12. 31)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전산 입력함(해당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나. 평가대상 공동체 및 참여 유형 구분

- (1) 평가대상 공동체 : 해당 분기말(4/4분기는 11월말) 현재 참여 공동체
 - ※ 매 분기 종료 시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여 공동체 현황 통보
- (2) 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 :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5개 유형)
 - 참여 유형은 해당연도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변경 불가
- (3) 공동체 참여유형 구분은 반드시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www.jayul.go.kr)의 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동체의 참여 유형으로 평가하여야 함(임의 변경 불가)
 - 참여 유형은 매년 1회 시·도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 가능(시·도 지역협의회에서는 참여유형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여야 평가시스템상 변경 가능)
 - 참여 유형의 변경은 당해 연도 1/4분기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1/4분기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

〈참여 공동체 유형 구분〉

| 유형 | 변경 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
|-------|--|
| 마을어업 |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
| 어선어업 | - 어선어업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 단체 중심 |
| 양식어업 |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 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 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
| 내수면어업 |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마을, 어선, 양식, 복합 구분 없음) |
| 복합어업 | -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 |

※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 [별표 1] 참조

(4) 광역단위 공동체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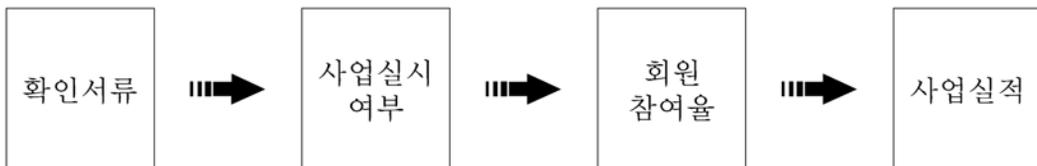
- 단일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 : 참여 인원 200명 이상
- 2개 이상의 단체로 구성된 공동체 : 참여 인원 100명 이상
- ※ 단체 : 어촌계나 선주협회와 같은 자생 조직을 의미함

2. 평가방법

가. 평가 순서

- (1)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연도와 분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역을 조회한다.
 - 날짜는 당일 시스템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
 - ※ 참여 유형은 자동적으로 표시되며, 평가 대상 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시스템에 표시됨
- (2) 현재 화면의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또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전’ 또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의 입력내용은 저장되지 아니함
- (3) 이미 평가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단,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연도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수정하고자 하는 연도와 분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역을 조회하면, 화면 하단에 평가담당자가 평가한 날짜가 표시된다.
 - 평가한 날짜 중 최종 일자를 선택하면 당시 평가내용 화면으로 바뀐다.
 - 평가한 내용을 수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 (4) 평가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은 지자체 수산사무소(또는 시·도, 시·군·구) 별로 전산입력 ID가 부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 동일한 수산사무소 소속이라도 관할 소속의 공동체에 대한 전산입력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

나. 분기별 평가(노력도)



□ 전자평가 확인서류(공통사항 ①)

- (1) 동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2)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평가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사업실시 여부(공통사항 ②)

- (1)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실시 여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2) 평가항목별 활동실적은 '평가항목' 란에서 사업실시 항목에 한하여 체크 (ex, 어선감척 여부 :) 함과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예, 아니오)의 '예' 부분에도 체크하여야 한다. (사업실시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모두 체크)
- * 해당 사업의 실시 여부를 체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 입력사항'의 '아니오'는 체크할 필요가 없음
- (3) '평가항목' 란의 사업실시 항목 체크와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입력하여야 점수가 부여된다.
- ex) '4. 수익 확대사업 추진 -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의 경우에는 '구축 여부'란 체크()와 동시에 '구축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입력하여야 함

□ 회원 참여율(공통사항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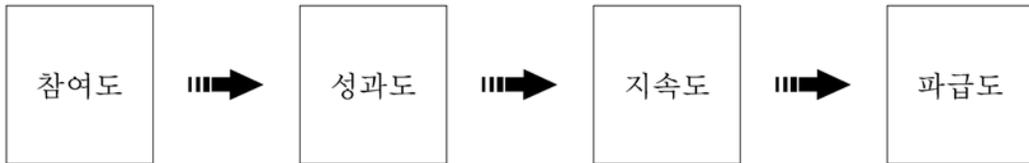
- (1)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회원 참여율 산정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2) '현원 수'라 함은 평가대상 분기의 말일 기준, 해당 공동체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 수를 말한다.
- (3) '참여수'라 함은 평가대상 분기기간 중 해당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한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합산한 누적인원 수를 말한다. 단, 누적인원 수가 현원 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 수를 참여 수로 한다.
- ex) '10. 3. 31 현재 현원 수 100명(공동체 전체 구성원 수), '10. 1/4분기중 바위담기 3회 실시(대회 50명 참석)의 경우 ⇒ 참여 수는 50명×3회=150명 이나, 현원수가 100명이므로 100명을 기입

□ 사업실적(공통사항 ④)

- (1) 각 항목별로 대상(생산액, 전체면적, 전체 품종수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평가대상 분기의 말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 (2) 실적(판매액, 실시면적, 실시 품종수, 실시횟수, 물량, 금액 등)은 평가대상 분기동안 발생한 누계 수치를 입력 또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한다.
- (3)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항목 중 자담분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담분에

대한 누계 수치만을 기입 또는 체크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횟수는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한다.

※ 자담 : 평가대상 공동체가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다. 연간 평가



(1) 연간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하여도 연간 활동실적 평가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2) 연간 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4/4분기 평가시 평가 대상 공동체의 연간 활동 실적(1. 1~12. 31)을 종합하여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파급도의 '지역특성 활동'은 지역특성 및 공동체의 독특한 활동내용을 평가에 반영하여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및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서,

- 시·도 중점 수산정책 참여 정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한 수산자원 관리활동 등을 종합 평가

-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지역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정하여 2월말까지 공동체에 통보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 평가항목 | 마을 | 양식 | 어선 | 내수면 | 복합 |
|------------------|-------|-------|-------|-------|-------|
| 1년간 총점수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I. 노력도(분기 1회 평가) | 700 | 700 | 700 | 700 | 700 |
| 1. 자원관리사업 | 240 | 240 | 320 | 290 | 300 |
| 가. 어획능력 삭감 노력 | - | - | 80 | 70 | 60 |
| 나. 채포체장 제한 | 80 | 80 | 80 | 70 | 60 |
| 다. 조업일수 단축 | - | - | 80 | 70 | 60 |
| 라. 어장휴식년제 실시 | 80 | 80 | - | - | 60 |
| 마. 생산량 조절/TAC | 80 | 80 | 80 | 80 | 60 |

| | | | | | |
|----------------------|-----|-----|-----|-----|-----|
| 2. 어장환경 조성사업 | 180 | 180 | 140 | 140 | 140 |
| 가. 투석, 해중림, 어도 등 | 40 | - | - | 40 | 30 |
| 나. 바위담기, 저질개선 등 | 40 | 70 | - | - | 30 |
| 다. 해적생물 구제 | 50 | 60 | 70 | 40 | 40 |
| 라. 해안청소, 어장내 폐어구 수거 | 50 | 50 | 70 | 60 | 40 |
| 3. 자원조성사업 | 70 | 70 | 40 | 70 | 60 |
| 가. 종묘배양, 시험양식 등 | 30 | 30 | - | 30 | 30 |
| 나. 종묘방류, 이식 | 40 | 40 | 40 | 40 | 30 |
| 4. 수익 확대사업 | 110 | 110 | 100 | 100 | 100 |
| 가. 공동판매, 계통출하 | 40 | 40 | 40 | 30 | 40 |
| 나. 생산물 판매망 구축 | 40 | 40 | 30 | 40 | 30 |
| 다. 자체상품 품질개선, 포장지 개발 | 30 | 30 | 30 | 30 | 30 |
| 5. 자율관리공동체 교육 | 100 | 100 | 100 | 100 | 100 |
| 가. 공동체 주관 교육 | 40 | 40 | 40 | 40 | 40 |
| 나. 선진지 견학 | 30 | 30 | 30 | 30 | 30 |
| 다. 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 30 | 30 | 30 | 30 | 30 |
| Ⅱ. 참여도(연 1회 평가) | 70 | 70 | 70 | 70 | 70 |
| 1. 어선어업인 참여 비율 | - | - | 70 | 70 | 30 |
| 2. 공동체 사업대상어장 비율 | 40 | 70 | - | - | 20 |
| 3. 소속어선 공동체 참여 비율 | 30 | - | - | - | 20 |
| Ⅲ. 성과도(연 1회 평가) | 80 | 80 | 80 | 80 | 80 |
|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 20 | 20 | 30 | 30 | 20 |
| 2.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60 | 60 | 50 | 50 | 60 |
| Ⅳ. 지속도(연 1회 평가) | 90 | 90 | 90 | 90 | 90 |
| 1. 공동체 회원 증가율 | 20 | 20 | 20 | 20 | 20 |
| 2. 구성원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 50 | 50 | 40 | 50 | 50 |
| 3. 갈등 및 분쟁 해소 여부 | 20 | 20 | 30 | 20 | 20 |
| Ⅴ. 파급도(연 1회 평가) | 60 | 60 | 60 | 60 | 60 |
| 1. 견학장소 제공, 출강 | 20 | 20 | 20 | 20 | 20 |
| 2. 공동체 홍보 | 20 | 20 | 20 | 20 | 20 |
| 3. 지역특성 활동 | 20 | 20 | 20 | 20 | 20 |

※ 세부 전자평가 매뉴얼 : 별첨

4. 항목별 세부 평가 매뉴얼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I. 노력도 | | 분기 1회 평가 |
| 1. 자원관리 사업 | | |
| 가. 어획능력 삭감 노력 | 어 선 내수면 합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획능력’이란,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 행위를 함에 있어 어업별로 적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특정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여 어획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함. ○ ‘삭감 노력’이란, 인위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어구 수(길이) 축소, 어선감척, 망목 확대, 특정 어구어법 사용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줄이는 것을 말함 ○ ‘어구 수(길이) 축소’와 ‘망목 확대’는 수산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 <p>*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선감척’은 정부지원에 의한 감척과 공동체 자체자금에 의한 감척을 모두 포함함 ○ ‘특정 어구어법’이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어구어법 이외의 일시 다량 어획을 목적으로 수산자원의 남획을 유발하는 개량된 어구어법이나 어구에 부착한 부속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과 이중 이상 자망(삼중망)의 사용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 항목)에 √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어구 수 축소, 어선 감척, 망목 확대, 특정 어구어법의 사용제한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획능력 삭감 노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실적 : 해당 항목 체크 사항별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실적이 자동으로 평가됨(배점 50%)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 | | | | | | | | | | | | | | | | |
|------------|-----------------|---|-----------------|-----------------|---------|-----------------|-----|-----|------|-------|------|-------|-----|-----|-----|-----|------|-----|------|-----|---|---|
| 나. 채포체장 제한 | 공 통 | <p>□ 용어의 정의</p> <p>○ ‘채포체장 제한’이란,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어획(채포, 채취, 생산)시 자율관리 대상 어종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어종별 채포체장 제한은 수산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보다 확대하거나 규정이 없는 대상어종의 체장 제한을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p> <p>* 단, 수산관계 법령 등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p> <p>□ 평가방법</p> <p>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p> <p>*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채포 체장 제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p> <p>3. 확대 크기 : 평가기간(분기)내 공동체 자율관리규약 전체 대상어종의 자체 설정 채포체장 제한 크기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체 채포체장 제한 크기를 제외한 크기로 평가하며 또한 공동체가 정한 수산관계법령외의 자체설정 대상어종은 채포체장 제한크기 평가시 어종당 전체 제한 크기를 반영 평가함(배점 50%)</p> <p>*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채포체장 제한 크기를 합산</p> <p>*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cm를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p> <p>□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p> <p>※ 주요 어종별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적용기준</p> <p>-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규정된 수산동·식물의 경우에는, 공동체 자율관리규약에서 정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체장 및 체중보다 5%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인정</p> <p>-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아래 수산동·식물은 아래에서 정한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p> <table border="1" data-bbox="445 1513 1219 1709"> <thead> <tr> <th>수산 동·식물</th> <th>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th> <th>수산 동·식물</th> <th>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th> </tr> </thead> <tbody> <tr> <td>가무락</td> <td>4cm</td> <td>민들조개</td> <td>4.3cm</td> </tr> <tr> <td>개량조개</td> <td>4.6cm</td> <td>바지락</td> <td>3cm</td> </tr> <tr> <td>개조개</td> <td>7cm</td> <td>보라성게</td> <td>7cm</td> </tr> <tr> <td>명주조개</td> <td>7cm</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금지체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어종은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권고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p>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 가무락 | 4cm | 민들조개 | 4.3cm | 개량조개 | 4.6cm | 바지락 | 3cm | 개조개 | 7cm | 보라성게 | 7cm | 명주조개 | 7cm | - | - |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금지 체장 및 체중 | | | | | | | | | | | | | | | | | | | |
| 가무락 | 4cm | 민들조개 | 4.3cm | | | | | | | | | | | | | | | | | | | |
| 개량조개 | 4.6cm | 바지락 | 3cm | | | | | | | | | | | | | | | | | | | |
| 개조개 | 7cm | 보라성게 | 7cm | | | | | | | | | | | | | | | | | | | |
| 명주조개 | 7cm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다. 조업일수 단축 | 어 선 내수면 복 합 | <p>□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일수 단축’이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별 어종 및 업종의 조업금지 기간보다 확대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는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 <p>□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조업일수 단축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확대 일수 : 평가기간(분기)내 공동체 자율관리규약 대상 어종 및 업종 중 자체 설정 금어일 수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금어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가함(배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어대상 어종 및 업종은 자율관리규약 대상어종을 말하며,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자체 설정 금어기간을 합산함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확대 일수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관리카드, 작업일지 <p>※ 주요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적용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6조 별표2(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에 따른 수산동·식물의 경우에는, 공동체 자율관리규약에서 정한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간보다 15일 이상 앞서거나 연장된 경우(금지기간 이외 연장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에만 인정 * 정해진 포획·채취금지기간만 설정 또는 정해진 기간과 이어지지 않을 경우 불인정 <p>ex) 개서대 금지기간이 6~8월인 경우(○,×) : 5~10월(○), 4~11월(5~10월 또는 4~9월 등만 인정)</p>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조업 일수 단축 | 어 선 내 수 면 복 합 | <p>-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아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금지기간은 아래에서 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内 또는 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과 연이어 1개월 앞서거나 연장된 경우에만 인정</p> <p>* 새로이 정한 포획·채취금지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p> <p>ex) 가무락 금지기간이 6~8월인 경우(○,×) : 5~9월(○), 5~6월(○), 5~7월(○), 8~9월(○), 9~10월(×), 7~10월(7~9월만 인정), 4~10월(5~9월만 인정) 등</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수산 동·식물</th> <th>포획·채포 금지기간</th> <th>수산 동·식물</th> <th>포획·채포 금지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가무락</td> <td>6~8월</td> <td>멸 치</td> <td>6~9월</td> </tr> <tr> <td>개조개</td> <td>7~8월</td> <td>바 지 락</td> <td>5~7월</td> </tr> <tr> <td>굴</td> <td>6~7월</td> <td>보라성게</td> <td>8~10월</td> </tr> <tr> <td>낙지</td> <td>5~6월</td> <td>홍 합</td> <td>3~5월</td> </tr> <tr> <td>지중해담치 (진주담치)</td> <td>3~5월</td> <td>전 어</td> <td>5~6월</td> </tr> </tbody> </table>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 금지기간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 금지기간 | 가무락 | 6~8월 | 멸 치 | 6~9월 | 개조개 | 7~8월 | 바 지 락 | 5~7월 | 굴 | 6~7월 | 보라성게 | 8~10월 | 낙지 | 5~6월 | 홍 합 | 3~5월 | 지중해담치 (진주담치) | 3~5월 | 전 어 | 5~6월 |
| |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 금지기간 | 수산 동·식물 | 포획·채포 금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무락 | 6~8월 | 멸 치 | 6~9월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조개 | 7~8월 | 바 지 락 | 5~7월 | | | | | | | | | | | | | | | | | | | | | |
| | | 굴 | 6~7월 | 보라성게 | 8~10월 | | | | | | | | | | | | | | | | | | | | | |
| | | 낙지 | 5~6월 | 홍 합 | 3~5월 | | | | | | | | | | | | | | | | | | | | | |
| 지중해담치 (진주담치) | 3~5월 | 전 어 | 5~6월 | | | | | | | | | | | | | | | | | | | | | | | |
| <p>- 금지기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어종은 전문 연구기관의 의견·권고 또는 규약에서 정한 경우만 인정</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용어의 정의</p> <p>○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 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어장을 일정 기간(1년 이상) 휴식하는 것을 말하며, 윤번제로 휴식하는 것을 포함함</p> <p>□ 평가방법</p> <p>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휴식년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p> <p>3. 면적률 : 평가 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 어장중 전체 어장면적과 어장 휴식면적(윤번제 등)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대상어장 면적중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p> <p>□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어장 휴식 년제 실시 | 마 양 복 을 식 합 | <p>□ 용어의 정의</p> <p>○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 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어장을 일정 기간(1년 이상) 휴식하는 것을 말하며, 윤번제로 휴식하는 것을 포함함</p> <p>□ 평가방법</p> <p>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휴식년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p> <p>3. 면적률 : 평가 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 어장중 전체 어장면적과 어장 휴식면적(윤번제 등)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대상어장 면적중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p> <p>□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용어의 정의</p> <p>○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 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어장을 일정 기간(1년 이상) 휴식하는 것을 말하며, 윤번제로 휴식하는 것을 포함함</p> <p>□ 평가방법</p> <p>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휴식년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p> <p>3. 면적률 : 평가 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 어장중 전체 어장면적과 어장 휴식면적(윤번제 등)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대상어장 면적중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p> <p>□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마. 생산량 조절 실시 /TAC | 공 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조절’이란 자원보호 및 생산량 과다로 인한 어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자율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공동체(마을, 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함 ○ ‘TAC(총허용어획량)’라 함은 특정 어종(어류, 패류 등)에 대해 최대 어획 및 포획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조업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량 조절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생산량(품종) 조절률(TAC)(배점 50%) : 평가 기간 중 공동체(마을, 양식)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와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는 품종의 수를 각각 입력하고,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종의 수(규약에 반영된 전체 어종 수를 말함)에 대한 생산량 조절을 하는 품종의 수의 비율로 평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2. 어장환경 조성사업 가. 투석, 해중림, 어소 (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자담분에 한함) | 마 을 내수면 복 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석’이란, 마을어장 내 해조류 등의 자원조성을 위해 부착 기질로서 바위나 돌 등을 살포하는 것 ○ ‘모패장’이란, 마을어장내 어장 일부를 구획하여 대상 생물의 일부 잔여량을 놓아두거나 모패를 살포한 장소 ○ ‘해조장’이란, 전복 양식 등에 먹이가 되는 해조류 시설 및 장소 ○ ‘채묘장’이란,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 생활기를 지나면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담치, 진주조개, 피조개, 가리비 및 멍게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그들을 부착시키거나, 또 부착력이 없는 바지락이나 대합 등 부유 생활기를 지난 다음 바닥에 침강할 때 거기에다 완류장치를 해주어 그들의 침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및 장소 ○ ‘중간육성장’이란, 부화 자어 또는 어린 치패로부터 양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묘를 사육하는 시설 및 장소 ○ ‘해중림’이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번무하여 해조류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의미 ○ ‘어소’라 함은 민물고기 산란장을 의미(내수면만 해당) ○ ‘어도’라 함은 민물고기의 이동 통로임(내수면만 해당)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가. 투석, 해중림, 어소 (민물고기 산란장), 어도 등 어장조성 실시 (자담분에 한함) | 마 을 내 수 복 합 |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 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2. 사업금액(배점 80%) : 자담분만 인정하며, 외부지원사업과 100% 자담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체크 * 사업금액은 '1. 실시 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수협 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 |
| 나. 바위담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 등 실시 | 마 을 양 복 합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바위담기'란 해조류 포자가 부착 기질에 착생이 용이 하도록 부착 기질인 갯바위를 담는 것을 의미함 ○ '저질개선'이란 객토, 경운, 형망 등 바닥갈이로 인한 저질 개선을 의미 ○ '시비재'란 황산철과 구조토를 콘크리트 기질에 혼합하여 조제한 임상 제2철제로서 철의 기능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비료를 시비하는 원리를 수중에 시비하여 서서히 철성 분이 돌출되어 해조의 생육과 영양염 공급에 효과를 주는 바다 비료를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 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바위담기와 저질 개선을 모두 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2. 면적률(배점 80%) : 평가기간(분기)중 자율관리 대상어 장중 전체 어장면적과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을 실시한 면적을 각각 입력하고, 대상면적중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하되, 바위담기 또는 저질개선을 모두 하였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적을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다. 해적생물 구제 (외래 어종) 실시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해적생물 구제'란, 불가사리·해파리뿐만 아니라 자율관리 대상에 해를 입히는 모든 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내수면은 외래 어종 구제를 말한다. (ex, 미더덕 수하연에 부착한 물우렁쟁이, 진주담치 등)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p>다. 해적생물 구제 (생태계 교란 야생 동물) 실시</p> | <p>공 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이란 내수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물 중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동물(양서류, 파충류, 어류)을 말한다. *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블루길, 큰입배스(4종)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해적생물 구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구제물량(배점 50%) * 분기내 누적 구제물량(생물 기준)의 해당 항목에 체크 * 불가사리 구제물량을 완전 건조시 : 생물중량으로 환산 적용(건조중량÷0.25)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수협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 |
| <p>라. 해안청소 /어장내 폐어구 수거</p> | <p>공 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청소’란, 어촌계 지선 혹은 주 조업지, 항·포구, 해안가, 선박 계류장 등에서 쓰레기 등을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어장내 폐어구 수거’란, 어장내(수중 및 수면)의 스티로폼 부자, 폐어구 통발, 그물 등을 구성원 혹은 고용한 스킨스쿠버를 통해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조업지) 또는 해안가 청소 및 어장내 폐어구 등 수거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수거물량(배점 30%) * 분기내 누적 수거물량의 해당 항목에 체크 4. 실시횟수(배점 20%) - 해안청소만 적용 * 분기내 누적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 □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기타관련 서류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p>3. 자원조성 사업</p> <p>가. 종묘배양 또는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실시 (자담분에 한함)</p> | <p>마을양식내수면복합</p>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묘배양’이란, 치어 및 치패, 해조류 등을 인공 혹은 자연 채묘 등으로 확보하여 이를 일정한 크기로 성장(배양)시키는 것을 말함 ○ ‘시험양식’이란, 새로운 품종을 시험적으로 양식을 시도하는 것 ○ ‘품종개량(개선)’이란, 기존의 품종을 성장을 잘하게 하거나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품종을 개량 혹은 개선하는 것을 말함 * 종묘배양, 시험양식, 품종개량(개선) 등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준해야 함 ○ ‘자담’이란, 자율관리 공동체가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는 시험양식을 위해 인건비 등 모든 제반비용도 포함함 * 내수면의 경우, 인공산란장이 이에 포함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종묘배양과 시험양식, 품종개량 등을 모두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 2. 종묘배양 및 시험양식, 품종개량 실적(배점 80%) : 자담분에 한하며, 외부지원사업과 100% 자담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체크 * 금액은 ‘1. 실시 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 |
| <p>나. 수산종묘 방류 또는 이식 실시 (자담분에 한함)</p> | <p>공통</p>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중 정부, 지자체, 수협 등의 지원사업비 중에서 자담 부분만 인정 ○ ‘자담’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수산종묘 방류 및 이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을 말하며, 이식행사를 위한 부대비용 등도 포함 ○ ‘수산종묘 방류’란, 일정한 크기의 치어 및 치패 등을 자율관리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어장 및 주 조업지 등에 방류하는 것을 말함 *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준해야 함 ○ ‘수산종묘 이식’이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한 종묘(어린 치어, 치패 등)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키우는 것을 말함 * 방류를 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성장 및 방류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지 침 |
|---|------------|---|
| | |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p>1. 실시 여부 :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하고 추가 입력사항의 '예' 부분에도 체크함(배점 20%)</p> <p>*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수산종묘 방류와 이식을 모두 실시할 경우에는 모두 체크2. 수산종묘 방류 또는 이식 실적(배점 80%) : 자담분에 한하며, 외부지원사업과 100% 자담사업으로 별도 구분하여 체크</p> <p>* 금액은 '1. 실시 여부'에서 체크한 항목별 사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자담분에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p>-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 군, 구),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p>4. 수익 확대 사업 추진</p> <p>가. 공동 판매, 계통 출하 실시</p> | <p>공 통</p>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p>○ '공동판매'란,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수협의 계통출하도 이에 포함됨.</p> <p>* 공동체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계약 판매한 비계통 판매도 포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p>1. 실시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30%)</p> <p>*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 판매 실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p> <p>3. 실적률 :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중 평가대상 분기중 전체 생산액과 공동 판매액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판매액에 대한 공동 판매액의 비율로 평가함(배점 50%)</p> <p>*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p>-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수협 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p>나. 생산물 판매망 구축</p> | <p>공 통</p>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p>○ '판매망 구축'이란, 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직판장, 간이판매장 등)을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망도 포함한다.</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p>1. 구축 여부 : 구축된 경우에 √ 체크하고 구축내용을 추가 입력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20%)</p> <p>* 이전 분기에 설치한 간이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망을 해당 분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p>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칩 |
|---|------------|--|
| <p>다. 자체 상품 품질 개선, 포장지 개발</p> | <p>공 통</p> |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8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물 판매망 구축에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수협확인, 관리카드, 작업일지</p>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자체상품 품질개선’이라 함은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획 및 채취에서 판매할 때까지 선도유지 등을 위한 노력을 말함 ○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브랜드화 하거나 가공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쉽게 하거나, 나무상자, 망,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것을 규격을 변형하거나 선도유지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 등을 도입 개발하는 사업 ○ 이전 분기에 개선 및 개발한 것이 해당 분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 개발 여부 : 개발한 경우에 √ 체크하고 개발내용을 추가 입력 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100%)</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p>5.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p> <p>가. 공동체 주관 교육</p> | <p>공 통</p>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공동체 주관 교육’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또는 구성원이 직접 교육하거나 혹은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의식 교육을 말함</p>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p> <p>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4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체가 주관하는 어업인 의식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p> <p>3. 교육 실시횟수 : 분기내 누적 교육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 (배점 40%)</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p>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나. 선진지 견학 실시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공동체가 성공사례, 선진기술 습득 등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이 인근 혹은 타 지역의 우수 공동체 또는 지도·연구기관을 방문, 견학하는 행사를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 중 체크(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8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다. 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국가, 자자체, 해경, 수협 등 공동체 자체 이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매 건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참여도를 말하며, 특히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출장하여 행한 교육도 포함한다. *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한다.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참여 여부 : 참여한 경우에 √ 체크하고 교육 주관기관을 추가 입력사항에 입력하여야 배점이 부여됨(배점 20%) 2. 회원 참여율 :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배점 50%)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집계함 3. 공동체 교육 참여횟수(배점 30%) : 분기내 누적 교육 참여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하며, 1건당 2명 이상이 교육에 함께 참여하였더라도 건당 1회로 계산함. ex) ‘07. 5. 16 담당공무원이 공동체 구성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다면 : 참여횟수 1회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II. 참여도 | | 연 1회 평가 |
| 1. 단체, 협회 등 어선 어업인의 공동체 참여 비율 | 어 선 내 수 면 복 합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어선어업인의 공동체 참여 비율’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촌계, 단체, 협회 소속의 전체 어선어업 어업인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어선어업인 수의 비율을 말함. * 단체, 협회라 함은 어촌계를 제외한 선주, 선장 등의 특정 지역 혹은 광역단위의 자생 단체(협회)를 의미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단체, 협회소속 전체 어선어업인 수 : 용어 정의에 따른 어촌계, 단체, 협회 소속의 회원 중에서 어선어업을 행하는 어업인의 수를 기입 2. 공동체 참여 어선어업인 수 : 1항의 전체 어선어업인 중에서 자율관리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수를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2. 참여 어촌계 소유어장 (마을, 양식)중 공동체 사업 대상 어장 비율 | 마 을 양 식 복 합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참여 어촌계 소유 어장’이란, 자율관리어업 실시 어장을 포함하여 어촌계(혹은 협회,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어장(혹은 양식장)의 전체 면적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어촌계 소유어장 전체 면적 : 어촌계 소유의 전체 어장(혹은 양식장) 면적(ha)을 기입 2. 자율관리어업 대상면적 : 1항의 전체 어장(혹은 양식장) 면적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대상 면적을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3. 참여 어촌계 소속 어선의 공동체 참여 비율 | 마 을 복 합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참여 어촌계 소속의 어선’이란, 어촌계 소속의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 수를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참여 어촌계 소유 전체 어선 수 : 참여 어촌계 소속 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어선 수를 기입 2. 공동체 참여 어선 수 : 1항의 전체 어선 수 중에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 수를 기입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Ⅲ. 성과도 | | 연 1회 평가 |
|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자담 투자액 포함) | 공 통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자금’이란, 순수 현금의 공동체 적립금과 자부담 투자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 ‘자부담 투자액’이란, 공동체 자체 또는 지자체, 수협 등의 타 기관에서 동 공동체에 실시하는 자원조성사업 등에 투입된 자담분의 금전과 무상으로 투입된 공동체 소속의 어선(사업기관 확인서류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임대료로 환산하여 산정)을 말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립 여부 : 해당 연도말 현재 적립액이 있는 경우에 √ 체크 (배점 20%) 2. 적립액 : 해당 연도말 및 전년도 말 현재 회계장부상의 순수 현금과 해당 연도 1년간의 자체자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을 입력(배점 80%) <p>* 평가 해당 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적립액은 공란 처리하고, 해당 연도 적립액은 참여 기간중의 적립액만 입력</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
| 2. 공동체 연 생산액 증가율 | 공 통 | <p><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액’이란, 공동체가 수행한 자율관리어업 어장 내에서 회원들이 생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율관리어업 이외의 어업생산액은 제외함 ○ ‘연 생산액’이란,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체 회계장부상 연간 생산액을 말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에 따른 전년도와 금년도 공동체 연 생산액을 해당란에 각각 기입 <p>* 평가 당해 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연 생산액은 공란 처리하고, 당해 연도 연 생산액은 참여 기간중 생산액만 입력</p> <p><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관리카드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IV. 지속도 | | 연 1회 평가 |
| 1. 공동체 회원 증가율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공동체 회원’이란, 연도 말 기준으로 공동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구성원을 말함. ○ ‘자연감소 인원’이란, 공동체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이사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감소한 인원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참여 인원 수 : 전년도 말과 금년도 말 현재 회원명부에 등록된 공동체 구성원 수를 해당란에 각각 기입 2. 자연감소 회원 수 : 평가 해당 연도의 자연감소 인원을 기입 * 회원증가율 산정시 자연감소 인원은 당해 연도 참여 인원 수에 자동적으로 합산되어 계산됨 * 평가 당해 연도 중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경우의 전년도 참여 인원 수는 공란 처리하고, 당해 연도 참여 인원 수와 자연감소 인원 수만 입력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규약,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2. 구성원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평가 목적(정의) ○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건수를 평가 <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 ○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어선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함. * 붙임 1 수산관계법령 위반종류 참조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평가대상 :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2. 실적계산 : 행정처분건수(벌금, 어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확인 ⇒ 공동체구성원 1인이 당해연도에 행정처분을 3회 받았을 경우 위반건수는 3건이 됨 3. 평가시스템 입력 : ‘행정처분건수’를 입력 4. 확인서류 : 행정처분대장,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장 등 기록 ※ 본 항목은 2009년 연간 평가부터 적용 |

| 평가항목 | 유형 | 평 가 지 침 |
|------------------|-----|---|
| 4. 갈등 및 분쟁 해소 여부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평가 정의(목적) ○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간 또는 인근 지역 어업인간의 어장 이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해결 노력을 평가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 ‘분쟁’이란 업종간, 타 어업간의 조업구역·어구분쟁, 마을어업과 양식어업간 분쟁 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소송) 등을 포함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1. 평가대상 : 공동체 내 또는 인근 어업인간 분쟁 2. 실적계산 : 분쟁 발생 유무 확인 3. 평가시스템 입력 -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미해소 : (배점 0%) -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적 또는 자율조정협의회 등을 통해 해소 : (배점 50%) - 분쟁이 발생하지 않음 : (배점 100%) 4. 확인서류 : 민원서류,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사실관계 확인 출장복명서 |

| 평가항목 | 유형 | 평가지침 |
|-----------------------|-----|--|
| V. 파급도 | | 연 1회 평가 |
| 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 여부 등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학장소 제공'이란, 다른 공동체 또는 어촌계 및 수산단체 소속 구성원(직원) 5명 이상이 당해 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함 ○ '우수사례 발표(출강)'란, 당해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전국대회를 포함한 각 기관(단체, 협회 포함) 주관의 집합 및 현장교육(토론회 포함)시 발표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견학장소 제공 : 평가 당해 연도 중에 견학장소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2. 우수사례 발표(출강) : 평가 당해 연도 중에 우수사례 발표 또는 출강실적이 있는 경우 그 횟수를 해당란에 체크(배점 50%)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
| 2. 공동체 홍보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활동'이란, 공동체가 자율관리 활동에 대하여 언론(TV, 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공동체명으로 규약에 규정된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을 현수막 또는 입간판으로 1주일 이상 홍보 또는 리후렛(1,000매 이상 제작하는 것에 한함)으로 제작, 배포하는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시 여부 : '예', '아니오'중 체크(배점 20%)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2. 언론홍보 실시횟수 : 분기내 누적 홍보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배점 40%) 3. 자체홍보 실시횟수 : 분기내 누적 홍보 실시횟수의 해당 항목에 체크(배점 40%) <input type="checkbox"/> 확인서류 : 회의록, 사진, 관리카드, 작업일지, 언론매체 보도사본 |
| 3. 지역특성 활동 | 공 통 | <input type="checkbox"/> 용어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활동'이란, 시·도의 중점수산시책의 참여정도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등 지역특성 활동을 실시한 것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활동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략히 입력한 후 점수항목 체크 1. 시·도 중점수산시책 참여정도(배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참여(10), 소극적 참여(5), 비참여(0) 2. 새로운 아이디어 적용 자원관리(배점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성(10), 기존방법 개선(5), 평범(0) |

<붙임 1>

수산관계 법령위반 종류

해면어업(마을, 양식, 어선, 복합)

| 평가항목 | 용 어 정 의 |
|----------------------------------|--|
| 1. 어장관리 규약에 의한 행사계약 미이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규약’이란, 수산업법 제40조에 의거,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이 취득한 전체 어업권에 대하여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 어업권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와 행사료 등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치규범을 말함 ○ ‘행사계약’이란,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어업권 행사방법의 일종으로, 수산업법 제38조의 어장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촌계 회원 등이 이를 행사하며, 지구별 조합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영업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조합원이 대행하는 경우를 말함 ※ ‘어장 빈매’란 어장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어업권 행사자 이외의 자와 행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함 |
| 2. 어장표시 미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표시’라 함은 수산업법 제69조(표지의 설치·보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7조(표지의 설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6조(표지의 설치)에 따른 어장의 기점 표시 및 어장구역 표시 등을 말함 |
| 3. 어장구역 이탈·과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구역’이란, 어촌계 및 지구별 조합이 취득한 전체 면허어업권에 규정된 어장을 말함 ○ ‘이탈 및 과점’이란, 면허된 어장구역과 위치가 상이하거나, 그 면적을 초과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 4. 어장관리 규약 등 미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규약 등 준수’란,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어자 자격, 입어방법, 어업권 행사방법, 어업시기, 어업방법, 입어료와 행사료 등의 준수 여부를 말함 |
| 5. 공동체 항·포구 등 불법어구 방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어구 방치’란 폐어구를 소각 처분하지 않거나, 수산관련 법령에 위반된 어구나 시설물 등에 대해 철거 및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어장 또는 공동체의 항·포구 등에 방치한 것을 말함 |
| 6. 염산 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염산 등 유해물질 사용 및 방치’란 무기산 염산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다한 약품 투입 등으로 인해 행정적 지도 내지 단속을 받은 것을 말함 |

| 평가항목 | 용 어 정 의 |
|-----------------------------------|--|
| 7. 무등록 및 방치 폐선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에 의거, 주 입·출항 항·포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을 말함 ○ ‘방치 폐선’이란 폐기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을 말함 |
| 8.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 시설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이란, 어업허가장이 없는 어선을 ○ ‘무면허 양식시설’이란 법령에서 정한 면허 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함 |
| 9. 과징금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징금’이란 행정청이 수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에 대한 수수료 등)를 말하며, 동 평가항목에서는 납입 기일이 경과한 어선에 한하여 적용 |
| 10. 조업 구역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업구역’이란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업구역을 말함 |
| 11. 허가 이외 어업 발생 (소형기저잔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이외 어업’이란, 수산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업으로, 동 평가항목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말함 |
| 12. 허가 받은 이외 어업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받은 이외 어업’이란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동 어선이 허가 이외의 어업(소형기선저인망 제외)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함 ※ 삼중망 등 불법으로 개량한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 13. 어구 실명제 및 적정 어구 사용 위반 (그물코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실명제’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9의 규정에 맞게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 ‘적정 어구’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업별(근해, 연안, 구획어업 등)로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규모, 사용량과 장비, 허가 정수 등을 말함 |
| 14. 무허가 어선어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어업’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명시된 어업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함 |

□ 내수면어업

| 평가항목 | 용 어 정 의 |
|------------------------------------|---|
| 1. 내수면 어장 관리 규약에 의한 행사계약 미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예시(붙임2 참조)를 토대로 공동체 총회를 거쳐 의결한 자체 규약임(이하 다른 평가항목도 동일) ○ ‘행사계약’이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내수면 자율관리규약에서 정한 각서 제출을 행사계약으로 봄 |
| 2. 어장표시 미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표시’라 함은 공동체 구성원이 자기 어업구역에 어장표시(표지 포함)를 설치하는 것을 말함 |
| 3. 어장구역 이탈·과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구역’이라 함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한 자기 구역 어장을 말함 |
| 4. 어장관리 규약 등 미 준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장관리구역 등 준수’란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어장환경 개선 사업(어장청소, 페어구 및 불법어구 수거, 유해어종 구제, 기타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업 등)의 실시 여부를 말함. |
| 5. 내수면 무허가 어선 및 무면허 양식시설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 어선’이란 어업허가 없는 어선을, ‘무면허 양식시설’이란 법령에서 정한 면허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함. |
| 6. 내수면 불법 어구 방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어구 방치’란 페어구를 소각처분하지 않거나 수산관련법령 및 내수면어업법에 위반된 어구나 시설물 등을 철거 및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어장구역이나 주변에 방치한 것을 말함 |
| 7. 내수면 무등록 및 방치폐선 발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등록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어선을 말함. ○ ‘방치폐선’이란 어선을 폐기하지 않고 방치된 선박을 말함. |
| 8. 내수면 어구 실명제 및 적정 어구사용 위반 (그물코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구실명제’란 내수면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한 허가받은 정치성어구(지망 포함)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발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 ‘적정어구’란 내수면어업법에서 허가받은 어구의 규모 및 통수를 말함 |

〈붙임 2〉

내수면 어장관리 규약(안)

200 . . .

○ ○ 내수면어업계
(○ ○ 자율관리공동체)

○○ 내수면 어업계 어장관리 규약

제정 200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내수면 어장관리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수면 어업계 계원이나 내수면 어업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어업구역(이하 ‘어장’이라 함)을 적용한다.

② 본 규약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준수 각서를 제출한 공동체 회원에게 적용한다.

③ 수산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내수면 어업계 정관, 자율관리어업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장에 관한 것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어장표시) 내수면 어업계원이 허가받은 어업구역에 어장 표시를 하여 자기 구역을 표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구역 준수) 계원은 허가받은 어업구역 안에서 어로작업을 하여야 하며, 자기 어업구역을 이탈하거나 과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어선관리) ① 어업에는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어선을 방치하여서는 아니되고, 방치된 어선이 있을 때는 내수면 어업계장에게 신고하여 소유자를 찾아 폐선 조치한다.

② 어선은 어로작업 시에만 사용하고, 어선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어장환경 개선) ① 지속적인 어장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서식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매월 1회 이상 어장청소 실시
2. 분기별 1회 이상 폐어구 및 불법어구 수거 실시
3. 분기별 1회 이상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베스 등의 유해어종 구제 실시
4. 기타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7조(어업의 시기 및 사용어구) ① 어업의 시기는 ○월부터 ○월까지로 하며,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어구의 사용은 허가받은 어구 종류로만 어로작업을 하며, 폐어구는 어업구역이나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다.

제8조(어구실명제 표시 설치) ① 내수면 어업계원은 각망 등 정치성 어구(유자망 포함)를 설치할 시는 어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구의 그물코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구를 사용한다.

제9조(자원보호) ① 자원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치어 방류시 방류지 근처 어구를 철수한다.

② 시장, 군수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군수가 본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준수 여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각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본인은 00내수면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을 함에 있어 회원으로서 내수면 어장 관리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각 서 인 : (인)

00 내수면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귀하

IV 시·도 지도자협의회 평가

- ◆ 본 지침은 각 지역별 지도자협의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
- ◆ 본 지침은 2010년도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적용

1. 평가 개요

- 평가 원칙 : 현장방문 없이 평가단 회의를 통해 평가
- 평가 대상 : 전년도 11월말 현재 자율관리어업 참여 공동체
 - ※ 매년 12월 초순에 농림수산물부에서 참여 공동체 현황 송부
- 평가 시기 :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3개(참여 유형 구분 없음)
 - 주관성을 전혀 배제시키지 못하는 현실적인 단점 보완을 위해 각 항목마다 3단계로 평가대상 공동체를 강제 배분하여 배점
 - 신규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통”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양호” 점수 부여

| 평가 항목 | 배 점 범 위 | 배분 공동체수 (전체공동체수 대비) | 평 가 범 위 | |
|-----------|-------------------------------|---------------------------------|---------------------------------|---|
| 1 | 자율관리어업 추진 정도 | 우수(400), 양호(300), 보통(20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공동체 추진력 |
| 2 | 대외활동 및 주변 파급(광역화) 정도 | 우수(300), 양호(220), 보통(15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지도자협의회 적극참여 정도, 주변 공동체 영향, 광역화 노력도 |
| 3 |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 결속력 | 우수(300), 양호(220), 보통(150) | 우수(20%), 양호(50%), 보통(30%) | 해당 어촌사회 평판 고려, 해당공동체의 단합 정도 |
| 총점(3개 항목) | | 1,000점(100%) | 1,000점(100%) | |

- 평가방법 :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 지도자로 평가단 구성, 평가

- 평가절차 : 지역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회 개최(1~2월) → 평가결과 시·도 통보(2. 28까지) → 전산입력 완료(3. 15까지)

2. 평가 방법

평가단 구성 및 평가회의

- 평가단은 지역별 지도자협의회 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임원단을 중심으로 참여 공동체수의 10%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지명함

※ 단, 평가단 인원은 최소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로 함

평가단 평가 실시

- 1차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별 평가 대상 공동체 할당 및 2차 평가회의 개최 일정 확정

※ 지역별로 평가대상 공동체 수, 지역별 현안 등을 감안하여 1차 회의 만으로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음

- 평가대상 공동체를 참여 유형 구분 없이 문항별로 우수(20%), 양호(50%), 보통(30%)으로 구분(1, 2차로 구분 평가 시에도 동일)

- 신규 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참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통”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양호” 점수 부여

평가결과 제출

- 공동체별 문항별 최종 평가결과(붙임 3 참조)를 시·도에 제출(2월 28일 이전)

평가시스템 입력(시·도)

- 우수, 양호, 보통 중 해당란에 ● 체크

* 각 단계별로 강제배분한 공동체수 초과시 입력 불가

- 평가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은 시·도 지역협의회 ID를 부여받은 자 입력

3. 항목별 세부 평가 매뉴얼

| 평가항목 | 참여유형 | 평가지침 |
|--|------|--|
| 1 자율관리 어업 추진 정도 | 공 통 | <p><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정도’란,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의 참여 가능 인원 대비 현재 참여자 수, 실시 가능 어장 대비 현재 실시 어장 면적, 자율관리에 대한 열의 및 발전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을 평가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수 배분 : 상기 용어정의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전체 공동체수를 3단계(우수 20%, 양호 50%, 보통 30%)로 강제배분 2. 평가시스템 입력 : 우수, 양호, 보통 중 해당란에 체크 - 각 단계별로 강제배분한 공동체수 초과시 입력 불가 |
| 2 대외활동 및 주변 파급 (광역화) 정도 | 공 통 | <p><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활동’이란, 해당 공동체 위원장의 지역별 지도자협의회 회의, 관계기관 자율관리어업 교육 및 연찬회 등의 각종 회의 참석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 ‘주변 파급정도’란, 해당 공동체의 지역내 인지도 및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확대 노력(참여 인원, 대상 어장, 미참여 단체 및 어촌계와 연대 등의 광역화 노력도 등) 정도를 평가함 <p><input type="checkbox"/>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수 배분 : 상기 용어정의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전체 공동체수를 3단계(우수 20%, 양호 50%, 보통 30%)로 강제배분 2. 평가시스템 입력 : 우수, 양호, 보통 중 해당란에 체크 - 각 단계별로 강제배분한 공동체수 초과시 입력 불가 |
| 3 공동체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간 결속력 | 공 통 | <p><input type="checkbox"/> 용어 정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리더십’이란,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구성원간의 갈등 조정, 공동체 활동에 대한 위원장의 노력도 등을 평가함 ○ ‘회원간 결속력’이란, 자율관리어업 활동에 대한 회원의 참여 정도 및 열의 등 구성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말함 |

| | | | |
|--|--|--|---|
| | | | <p>□ 평가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체수 배분 : 상기 용어정의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전체 공동체수를 3단계(우수 20%, 양호 50%, 보통 30%)로 강제배분 2. 평가시스템 입력 : 우수, 양호, 보통 중 해당란에 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로 강제배분한 공동체수 초과시 입력 불가 |
|--|--|--|---|

〈평가 작성 예시〉

○ 관내 참여공동체 수의 10% 범위(최대 10명, 최소 3명)내에서 평가단(공동체 지도자)을 구성(1월중)

※ 평가단 구성(예)

- 전남서부 : 참여공동체 110개소의 10%는 11명이나 평가단은 10명으로 구성
- 제주 : 참여공동체 42개소의 10%는 4명이므로 평가단은 4명으로 구성
- 부산 : 참여공동체 15개소의 10%는 2명이나 평가단은 3명으로 구성

- 구성된 평가단을 소집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여 평가위원별로 공동체를 배분하고, 2차 회의 일정 확정(1~2월중)

※ 공동체 배분은 위원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해당 공동체의 활동 및 발전가능성 등 전반적인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동체의 현실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위원에게 함

- 평가위원별로 배정받은 공동체에 대하여 문항별로 1차 평가(점수 부여)를 2차 회의 이전에 완료(2월 이전)

-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각 위원별로 1차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평가위원 전체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공동체를 문항별로 우수(20%), 양호(50%), 보통(30%)으로 구분

- 문항별로 평가된 결과를 별첨 서식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시·도에 결과 제출(2월 28일 이전)

〈붙임 3〉

지도자협의회 공동체 평가 결과표 제출

- 평가기관(제출기관) : OO 자율관리어업 지도자협의회
- 평가대상 공동체수(합계) : ○○개 공동체

| 공동체명 | ① 자율관리어업 추진정도 | ② 대외활동 및 주변 파급 (광역화) 정도 | ③ 공동체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간 결속력 |
|--------|--|--|--|
| 합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개소 ○ 우수 : ○개소 ○ 양호 : ○개소 ○ 보통 : ○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개소 ○ 우수 : ○개소 ○ 양호 : ○개소 ○ 보통 : ○개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 ○개소 ○ 우수 : ○개소 ○ 양호 : ○개소 ○ 보통 : ○개소 |
| OO 공동체 | 우수, 양호, 보통 | 우수, 양호, 보통 | 우수, 양호, 보통 |
| | | |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2009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표를 상기 내역과 같이 제출하오니, 전산 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00일
 평가위원장 : 000 (인)
 평가위원 : 000 (인)
 평가위원 : 000 (인)
 * 모든 평가위원이 서명

○○ 시·도 (해양)수산과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

| | | | | | | |
|--|--------------------|--------------------------|------------|------------------------------------|--------------|----|
| 신 청 자 | 공동체명 | | | 참여 어촌계 (또는 지역, 협회) | | |
| | 성 명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호 | 전화 | T) H) | |
| | 주 소 | | | | | |
| | 영어종사경력 | 년 | 참여 유형 |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마을+어선) 중 택1 | | |
| | 공동체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 참여가구 (인 원) | ()호 ()명 | |
| 신 청 내 용 | 주요업종 | | | 사업규모 (어장면적, 업종별 척수 등) | | |
| | 사 업 예정지역 | | | 대상품종 | | |
|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비) | 1. | 2. | 3. | 4. | 5. |
| 자율관리어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자 : ○○○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 | | | | | |
| ○○ 지역협의회 위원장 귀 하 | | | | | | |
| 첨부서류 1. 자율관리규약 3부 2. 자율관리위원회 구성현황 3부 3. 사업계획서 3부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년도) 자율관리어업 신규참여(포기, 취소) 공동체 현황 보고

가. 신규참여공동체 선정 현황

| 순번 | 선정일자 | 공동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참여유형 | 참여인원 | 주요사업 | 비고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포기(취소)공동체 현황

| 순번 | 포기일자 | 공동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참여유형 | 참여인원 | 포기사유 | 비고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가)>

- ① 선정일자 :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자율관리공동체로 선정한 날짜
- ② 공동체명 및 대표자 : 자율관리공동체명 및 대표자 성명
- ③ 소재지 : 자율관리공동체가 소재한 주소지를 “읍·면·동”까지 기입
- ④ 참여유형 : 자율관리규약에 의한 어업형태(예: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마을+어선, 양식+어선 등 등)
- ⑤ 참여인원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인원
- ⑤ 주요사업 : 자율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기입
- ⑥ 비 고 : 신규참여공동체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입

<작성방법(나)>

- ① 포기(취소)일자 : 자율관리공동체가 참여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참여공동체 선정을 취소한 날짜
- ② 공동체명 및 대표자 : 자율관리공동체명 및 대표자 성명
- ③ 소재지 : 자율관리공동체가 소재한 주소지를 “읍·면·동”까지 기입
- ④ 참여유형 : 자율관리규약에 의한 어업형태(예: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마을+어선, 양식+어선 등 등)
- ⑤ 참여인원 :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체인원
- ⑤ 포기(취소)사유 : 자율관리어업을 포기(취소)하는 주요 사유를 간략히 기입
- ⑥ 비 고 : 포기(취소)공동체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입

〈별지 제3호 서식〉

우수공동체 추천서

| | | | | |
|--|-------------|------------------------|------|----------|
| 공동체 개요 | 공동체명 | | 참여유형 | |
| | 성명 (대표자) | | 전화 | T) H) |
| | 주소 | | | |
| | 사업규모 | (품종별 어장면적, 업종별 어선척수 등) | | |
| 추천내용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활동 실적 2. 성공사례 3. 향후 주요활동 추진계획 4. 다음연도 주요사업 계획 요약(현안·숙원 사업) 5. 기타 참고사항 등 | | | | |
| 첨부서류 1. 자율관리규약 1부 2. 사업계획서 1부(시행지침 사업계획서 서식 참조)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훈령 제231호)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231호)

「1995. 11. 14.」

「훈령 제834호 전문개정」

개정 1996. 6. 13. 훈령 제 862호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개정 1996. 10. 28. 훈령 제 877호

개정 1997. 10. 29. 훈령 제 913호

개정 1997. 12. 30.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개정 1998. 3. 9. 훈령 제 931호

개정 1998. 11. 12. 훈령 제 965호

개정 1999. 11. 16. 훈령 제1003호

개정 2000. 11. 27. 훈령 제1050호

개정 2001. 12. 21. 훈령 제1083호

개정 2002. 11. 29. 훈령 제1122호

개정 2003. 11. 17. 훈령 제1145호

개정 2004. 12. 17. 훈령 제1183호

개정 2005. 12. 22. 훈령 제1219호

개정 2006. 12. 29. 훈령 제1261호

개정 2007. 12. 28. 훈령 제1291호

개정 2008. 7. 23. 훈령 제 38호

개정 2009. 8. 12. 훈령 제 99호

개정 2010. 12. 21. 훈령 제 23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의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여 농수산업·농어촌종합대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사업”이라 함은 이 훈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2. “자율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수산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
 - 가-2.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15호의 어획물 운반업자, 제17호의 수산물가공업자,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 산업에 종사하는 자,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에 의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는 자
 - 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의 공동조직(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 나-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 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 가공업협동조합,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 내수면어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 어업계(이하 “생산자 단체 등”이라 한다)
 - 다. 농림수산업 또는 농어촌과 관련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 등”이라 한다)
3. “공공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자체 및 정부투자 기관이 설립한 공사 또는 주식회사 등을 포함한다) 등이 공공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농림수산사업을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 이라 한다.)의 과단위 보조기관(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이 훈령에 따라 농림 수산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과로서 농림수산 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업시행기관”이라 함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상의 사업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수산사업의 시행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농림수산심의회」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산업법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개별규정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모든 농림수산사업은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별표1의 농림수산사업 분류표에 기재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국제협약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매비축
2. 정부가 일시적으로 과제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조사연구(조사연구의 목적이 되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정사업과 관계없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법인에 한한다.)의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
4.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또는 정부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직접집행하는 사업비
5. 기관운영, 차액보상, 이차보전 등 사업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6.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이 특정기관, 특정지역, 특정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에 한정되어 사업부서와 사업시행자간으로도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책임을 지는 사업

제4조(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가 정하는 서식에 의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이하 “사업예정년도”라 한다.)의 전년도 11월 2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작성시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별표 2),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로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와 그 산하기관·단체, 청, 시도,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생산자단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는 제4조1항과 제3항에 따라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제5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은 이 훈령에 의하여 확정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농림수산사업중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가 시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

제5조(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중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수산정책실장, 각 국·관장(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 및 청의 기획조정관
2. 농림수산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청의 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5조 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의 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기획조정관 제6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기획조정관이 된다.
- ④ 실무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국·관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 ⑥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실무위원회에 준용한다.

제3장 전문가위원회

제11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별로 전문가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농림수산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 4.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 3억원 이상의 자율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사업자선정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12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 1. 해당 국·관 소속의 과장
-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3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5조(준용규정) 제8조제3항 내지 제5항의 사항은 전문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4장 농림수산사업

제16조 (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이 통지되면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중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홈페이지에 게시
2. 게시판 게시 및 반상회보 등재

③ 시군등,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등의 장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농어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토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농림수산사업의 안내 등) ① 시군등, 읍·면·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

장소,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의 장은 당해 기관의 직원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등 농림수산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 (농림수산사업의 신청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시군등의 총괄부서,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또는 읍·면·동에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 농업기술센터, 수산사무소 소장 및 사업예정지 관할외의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내용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사서 및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붙여 시장·군수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9조 (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제출기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예정 년도내 사업추진가능 여부와 예산지원범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사업대상자를 수시로 신청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 검토) ①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접수한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이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어업인후계자 및 전업어가지원사업을 제외한 수산사업은 5천만원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기관에 사업성검토를 의뢰 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것은 농업기술센터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것은 농업협동조합
3. 임업과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3-2. 수산업과 관련된 것은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사무소

4. 제1호 내지 제3-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류로써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 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대출신청 자료
2. 제1호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④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사업신청자에게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해당 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제20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수산사무소 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군등의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농림수산사업신청서의 심사)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서와 신용조사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업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3.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4. 시도, 시군등 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자체 지원계획
5. 시군등의 전체계획과의 조화
6.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7.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4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①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등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 ③ 시군등의 사업부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사업부서가 작성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붙여서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제25조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등)** ①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부서 및 총괄부서 등이 상정한 신청자에 대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 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②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위원회(품목별 소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당해 소분과위원회를 말한다.)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자치구의 자체 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30인 이내, 수산업법시행령 제73조제3항제4호 및 제6호에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자의 수가 그 최대인원에 미달되는 경우는 그 최대인원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장·군수 등이 따로 구성하는 전문 심의기구의 심의로써 제1항의 심의에 갈음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지원신청금액이 20억원이상인 경우와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가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 및 농림수산사업신청서 등을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는 전문가(전문기관을 포함한다.)를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체심의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결로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시군등 및 시도의 농림수산심의회 구성원은 심의 결과에 대해 회의내용이 공개

될 때까지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제26조 (시군등의 예산신청 및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의 농림수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별로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시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내용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등에 대한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시군등의 홈페이지, 홍보지 또는 반상회보 등에 실어야 한다.

③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 및 지원예정금액, 예산 또는 기타의 사정에 따라 자금지원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지원예정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27조 (시군등의 예산신청에 대한 시도의 심사 등) ①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시도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 사업부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를 제23조, 제24조제2항 및 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연차별 자금지원계획
2.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금지원계획 또는 시도의 자체 자금지원계획

③ 시도의 총괄부서는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의 조정안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포함한다.)을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 농림수산심의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의 총괄부서는 시도농림수산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사업별로 시군등의 사업량 및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의 총괄부서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와 자금지원우선순위 확정내용을 시군등에 통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시도의 홍보지 등에 실을 수 있다.

제28조 (시도의 예산신청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심사) ①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의 사업량과 소요 예산을 조정한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등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제29조 (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정부예산안(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되면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로부터 시도 및 시군등의 예산배분계획안을 제출받아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시도 예산안에 따라 시군등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

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립 또는 영어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정부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예산담당부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시도예산의 배분계획 확정 및 통지) 시도지사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을 확정하여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군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예산의 시군등에 대한 배분계획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예정년도의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확정권한이 시군등외의 기관에 있는 경우는 당해 기관이 확정된 내용을 말한다.)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제29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등이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수산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1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의 선순위자

제33조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확정의 공지) ①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시군등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군등의 총괄부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지를 할 때에는 당해 시군등 관할 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농림수산사업의 관리

제34조 (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시장·군수등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자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농림수산사업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는 농림수산업무평가규정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수산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림수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지방자치단체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36조 (농림수산사업의 결산) 시장·군수등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및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익월 1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시군등의 결산서를 근거로 시도의 결산을 하여 익월 2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담당 부서에 결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농림수산사업의 관리책임은 법령 또는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②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도의 총괄부서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진도 운영상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고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하여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당해 읍·면·동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3의 농림수산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군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수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제38조 (신규사업의 제안)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신규로 농림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신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수산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어업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등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신규사업의 선정요구)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거나 제3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사업추진계획(안)을 붙여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전문가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의견 수렴과 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신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신규사업 타당성분석자료, 성과평가체계, 평가지표 등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에 제출하여 신규사업의 선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분석결과 신규사업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신규사업의 채택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의 선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업무평가규정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식품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신규사업을 심의한 때에는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상 긴급성이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총괄부서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신규사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1조(전임자문관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2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부서는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수산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실태조사 실시) 모든 신규사업은 사업개시 후 6월이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대책에 반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정보완지침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특례) 신규사업의 자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사업을 제안한 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사업채택을 확정된 즉시 제33조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신규사업의 채택을 확정된 날부터 2월이내에 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5조에 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46조 (준용규정) 청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 (자금지원실적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자금지원대상자별 자금지원실적을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매체 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농수산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 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별표 4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당시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업이 이 훈령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당해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요령에 의한 세부사업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 10.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림사업분류표는 1997.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

수산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농림수산사업지침심의위원회운영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1997. 10.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1998.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1998. 3. 9.>

- ①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1998. 11. 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9.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 2의 규정을 1999. 1. 1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1999. 11. 16.>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과 제41조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0.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0. 11. 2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1. 12. 21.>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2.1.1.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2.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2. 11.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분 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3.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3. 11.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3조의2의 규정은 2004.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4. 12. 17.>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의 규정은 2005.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5. 12. 2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6.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6. 12. 29.>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7.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7. 12. 28.>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사업 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1. 1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8. 7. 23.>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문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 사업분류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한 제4호의 규정은 2008. 7월. 23이전에 시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09. 8. 12.>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2년 8월 1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부칙<개정 2010. 12. 21.>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전까지 이 훈령을 폐기 후 다시 발령하여야 한다.

[별표1 : 제3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분류표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합 계(98) | | (67) | (31) |
| 제1권 식량·원예·식품 ·산림분야(47) | | (37) | (10) |
| [식량분야 15] | | (6) | (9) |
| | I. 생산기반확충 | 영농규모화사업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 배수개선사업 방조제개보수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수질개선사업 |
| | II. 생산 및 유통 개선 |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명 | |
|------------------|--------------------|---|----|
| | | 자율 | 공공 |
| [원예·식품 분야 23] | I. 생산 및 유통개선 | (23) 물류표준화사업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농산물자조금지원사업 산지유통종합자금 원예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소비자유통활성화사업 농식품소비지·산지상생협력사업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농산물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농산물우수관리제도운영사업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 |
| | II. 과수생산 및 유통개선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임업 및 산촌분야 9] | I. 생산 및 유통 개선 II. 산림자원조성 | (8) 산림경영계획사업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산림소득증대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 사립수목원지원사업 백두대간주민소득지원사업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 (1) 조림·숲 가꾸기사업 |
| 제2권. 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 분야(51) | | (30) | (21) |
| [농촌개발분야 19] | I. 생산 및 유통 개선 II. 기술개발 III. 인력육성 IV. 소득보전 | (13)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농어업경영권설립사업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6)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 V. 소득원개발 및 생활환경개선 |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한계농지정비사업 | 농업인재해공제사업 농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 [축산분야 12] | I. 사육기반확충 II. 생산 및 유통 개선 | (9)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마필산업육성사업 가축및계란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축산자조금지원사업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3)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 사업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부사업명 | |
|------------|-----------------|--|---|
| | | 자 율 | 공 공 |
| [수산분야 12] | I. 생산기반확충 | (7) | (5) |
| | |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 연안바다목장사업 바다숲조성사업 |
| | II. 생산및유통 개선 |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 | | III. 기계화 및 인력육성 |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사업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
| IV. 소득보전 | 수산부문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
| [광특회계분야 8] | | (1) | (7) |
|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사업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 농어업기반정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별표2 : 제4조제2항 관련]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 분류 | 프로세스 | 주 관 | 시 기 | 주요내용 |
|------|------------|--------------------|------------|---|
| 기초단계 | 수요조사 |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 전년도 4월 |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
| | 예산요구 | 농림수산 식품부 | 전년도 6월 |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
| | 예산확정 | 농림수산 식품부 |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
| 계획단계 | 사업지침 시달 | 농림수산 식품부 |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예산규모 등) |
|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 당년도 2월 |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
| | 사업자 선정 |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 당년도 2월 |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
| 추진단계 | 세부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 당년도 4월 |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
| |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 당년도 12월 | ·사업 추진 |
| | 자금배정 |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 당년도 9월 |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
| 관리단계 | 이행점검 |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 당년도 10월 |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
| | 성과점검 |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 당년도 12월 |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
| | 사업평가 | 농림수산 식품부 | 익년도 3월 |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 | 환 류 | 농림수산 식품부 | 익년도 4월 |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별표3 : 제37조제4항 관련]

농림수산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 | |
|--|--|
| 사 업 개 요 | |
| 이 사업은 ○○○○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
| 1. 사 업 명 : | |
| 2. 사 업 자 : | |
| 3. 지원규모 : | |
| 4. 재 원 : | |
| 5. 사 업 비 : | |
| 6. 사업기간 : | |
| 사 업 자 ○ ○ ○ | |

110cm

80 cm

주) 공공사업의 경우는 사업자 란에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명 및 관리책임자를 기재

〈예〉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수산물 가공공장, 농수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수산물종합판매장, 어촌민속 전시관, 직거래 판매시설, 해양종합수련원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양식 단지, 어장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건설, 어촌휴양단지, 연안정비, 오염 해역준설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신설 2002. 11. 29〉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 (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카도 가능함

4. 기 타

-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표시문안을 「이 사업은 ○○○○년도 농(산)어촌구조개선대책사업중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명시함

[별표4 : 제48조 관련]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개정 2005. 12.>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개정 2005. 12. >

나. <삭제 2004. 11. >

다. <삭제 2004. 11. >

라.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개정 2008. 7>

마.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개정 2007. 12.>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개정 2010. 12.>

바.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사.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7. 12>

아.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할 것 <신설 2002. 11. 29>

자. <삭제 2008. 7>

차.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수산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영어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개정 2005. 12. >

카. <삭제 2007. 12.>

타. 재무제표 징구<신설 2006. 12. >

2. 사업별 지원요건 <개정 2002. 11. 29>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삭제 2002. 11. 29>

나.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다.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라. <삭제 2005. 12.>

마. <삭제 2005. 12.>

바. 농수산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 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사. <삭제 2005. 12.>

아.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수산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수산업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자. <삭제 2006. 12.>

차. <삭제 2005. 12.>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 | | | | | | | | | |
|------------------|---|----------------|----------------|----------------|----------------|----------------|-----|---|--|
| 영농 규모 (ha) | | 논 | 밭 | 과수원 | 사료포 | 목초지 | | 계 | |
| | 소유 | | | | | | | | |
| | 임차 | | | | | | | | |
| | 계 | | | | | | | | |
| 재배 현황 (ha) | 벼 | 사과 | 배 | 포도 | | | | 계 | |
| | | | | | | | | | |
| 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저온저장고 | 일반저장고 | 선과기 | 기 타 | | | |
| | | 관 정 : | ha | m ² | m ² | 대 | | | |
| | | 점적관수 : | | | | | | | |
| | | 스프링클러 : | | | | (톤) | | | |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과장 | 인공수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기 타 | | |
| | | m ² | 개소 (톤) | 식 | (대 톤) | m ² | | | |
| | (주) : 1. 선과기의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 | | | | | | | |
| 기 타 사 항 | | | | | | | | | |

2. 사업계획

- 사업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 | | | |
|--------------------------|--|----|-----|-------|-------------|----|----|-----|----|
| | | |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 | 지방비 | 자담 |
| | | | | | 계 | 보조 | 대출 | | |
| 계 | | | | | | | | | |
| 농가 | ○○○○ ○○○○ ○○○○ | | | | | | | | |
| 생산자 단체등, 회사, 기타 |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 | 3/4 | 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 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 | | | | | | |
|--|-----------------------------|--------------------------|----------------|------------|----------------------|--|
| 신청자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 | | |
| | 성명 (대표자명) | 주민등록 번호 | 전화 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영어종사경력 | 년 | 학력 | 년 월 | 학교() 과) 졸업 중퇴 | |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 | 참여어가수 | 호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 | | |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 어업면허 | | | | |
| | | 종류 | 허가번호 (허가기관) | | | |
| 사업비 (천원) | 계 |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 | 지방비 (%) | 자부담 (%) | |
| | | 국고계 (%) | 보조 (%) | 용자 (%) | |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 | | | | | |
|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 | | | | | |

-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 자 산 | | | 부 채 | | |
|-----|-----|-----|-----|-----|-----|
| 항 목 | 금 액 | 비 고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 | | | |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용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 구 분 | 금 액 | 부 담 자 | 부 담 방 법 |
|-----|-----|-------|---------|
| | | | |

7. 사업의 효과

| 주요품목 | 생산량 | 생산효과 | 고용효과 | 비 고 |
|------|-----|------|------|-----|
| | | | | |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 수 입 | | | 지 출 | | |
|-----|-----|------|-----|-----|------|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항 목 | 금 액 | 산출근거 |
| | | | | | |

9. 사업비 명세

| 품명 | 규격 | 재질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 제18조제5항 관련]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 | | | | | | | | |
|--------------|-------|---------------|----------|-----------------|-------------|----|-----|----|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 참여자수 | | |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번호 | () - | | | |
| 주소 | |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업비 (천원) | | | | | |
| | 사업 규모 | | 합계 |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 | | 지방비 | 자담 |
| | | | | 계 | 보조 | 융자 | | |
| 사업 예정지 | | | | | | | | |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금 현황 | | | 융자금 현황 | | | |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 | | | | | | |

3. 담보물(재산) 현황

|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의 관계 | 예상 평가액 (백만원) |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
| | | | | | | | |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 제21조제1항 관련]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 | | | | | | |
|-------------|------|-------------|-----------|------|----|-----|
|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 참여자수 | | |
| 성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 전화 | | |
| 주소 | | | | | | |
| 신청내용 | 사업명 | | 사업비 (천원) | | | |
| | 사업규모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 | | | 지방비 |
| | | | 계 | 보조 | 대출 | |
| 사업예정지 | | | | | 자담 | |

2. 농지이용계획

| 농업진흥지역안 | | 농업진흥지역밖 | |
|---------|----|---------|----|
| 구역 | 지구 | 구역 | 지구 |
| | | | |

3. 사업검토

| 구분 | | 평가 | | | 검토의견 |
|------|--|----|---|---|------|
| | | 상 | 중 | 하 | |
| 사업능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어경력 ○ 후계(어업)인력 또는 조직력 ○ 영농·어기술 또는 경영능력 ○ 영농·어 규모 | | | | |
| 사업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 | | | |
| 입지여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 | | |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제22조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 | | | | | | | |
|------------------------|-------------------|----|-----|-------------|----|------|------------------|
| 주 소 | | | | | | 전화번호 | () -) |
| 생산자단체등· 회사· 기타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대표자 (성명) | | | |
| 신청사업명 | | | | | | | |
| 소요사업비 | 총액 | 천원 | 보 조 | 대 출 | 자담 |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과거 1년간 연체사실 | |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 신용상태 | | |
|-------------|---|-------------------|--------------|---|------|----|----|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 | 천원 | | |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협동조합장 (인)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5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 |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
| 성명 또는 명 칭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2. 일반현황(년 월말 현재)

| | | | | | | |
|-----------|---|-----|------|------|-------|--------|
| 경영규모 |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젓소200두) | | | | | |
| 자금조달 | 연도 | 계 | 국고보조 | 국고융자 | 지방비보조 | 자부담·기타 |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부 동 산 유 | 토지계 | 논 | 밭 | 과수원 | 임야 | 대지·기타 |
| | m ² | | | | | |
| | 건물계 | 창고류 | 공장류 | 축사류 | 주택 | 기 타 |
| | | | | | | |
| 기타주요 자산보유 |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 | | | | |

3. 월별경영수지(년 월분)

| 일자 | 수 입 | | | 지 출 | | | 잔 액 (천원) |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 (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금액 (천원)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 29 | | | | | | | |
| 30 | | | | | | | |
| 31 | | | | | | | |
| 월계 | | | | | | | |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부 작성

4. 경영성과(-)

| 구 분 | 내 용 | 수 량 | 금 액(천원) | 비 고 |
|-----|---------------|-----|---------|-----|
| 수입 | 주 산 물 | | | |
| | 부 산 물 | | | |
| | 계(A) | | | |
| 지출 | 종자(묘)대 | | | |
| | 농약 및 비료대 | | | |
| | 원료구입비 | | | |
| | 전기료 및 유류대 | | | |
| | 기타 제재료비 | | | |
| | 小농구 구입비 | | | |
| | 소가축 구입비 | | | |
| | 인 건 비 | | | |
| | 수 리 비 | | | |
| | 농기계사용료 | | | |
| |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 | | |
| | 토지임차료 | | | |
| |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 | | |
| | 농기계 감가상각비 | | | |
| | 차입금이자 | | | |
| | 자본용역비 | | | |
| | 기타비용 | | | |
| | 계 (B) | | | |
| 손익 | A - B | | | |

〈작성요령〉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증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부에 의함(가계비는 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팽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의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 4년-6년 |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 15년-25년 |
|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 30년-50년 |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 적 용 대 상 자 산 | 기준내용년수 |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
|---|--------|-------------------|
|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 5년 | 4년-6년 |
|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10년 | 8년-12년 |
| 농업중 과수 | 20년 | 15년-25년 |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
(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6호서식 : 제34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 월일 | 수 입 | | | 지 출 | | | 잔 액 (천원) |
|----|------|----|------------|------|----|------------|-------------|
| | 수입내용 | 수량 | 금액 (천원) | 지출내용 | 수량 | 금액 (천원) | |
| 1월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11 | | | | | | | |
| 12 | | | | | | | |
| 13 | | | | | | | |
| 14 | | | | | | | |
| 15 | | | | | | | |
| 16 | | | | | | | |
| 17 | | | | | | | |
| 18 | | | | | | | |
| 19 | | | | | | | |
| 20 | | | | | | | |
| 21 | | | | | | | |
| 22 | | | | | | | |
| 23 | | | | | | | |
| 24 | | | | | | | |
| 25 | | | | | | | |
| 26 | | | | | | | |
| 27 | | | | | | | |
| 28 | | | | | | | |
| 29 | | | | | | | |
| 30 | | | | | | | |
| 31 | | | | | | | |
| 월계 | | | | | | | |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작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훈령 제241호)**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41호)

| | | | | |
|----|-------|-----|-----|---------------------------|
| 제정 | 1996. | 6. | 13. | 훈령 제 862호 |
| 개정 | 1996. | 8. | 8. | 훈령 제 864호 |
| 개정 | 1996. | 10. | 19. | 훈령 제 875호 |
| 개정 | 1997. | 10. | 29. | 훈령 제 912호 |
| 개정 | 1997. | 12. | 30. | 훈령 제 925호 (농림업무평가규정) |
| 개정 | 1998. | 3. | 9. | 훈령 제 932호 |
| 개정 | 1998. | 7. | 23. | 훈령 제 948호 |
| 개정 | 1998. | 12. | 19. | 훈령 제 967호 |
| 개정 | 1999. | 11. | 8. | 훈령 제 1002호 |
| 개정 | 2000. | 11. | 13. | 훈령 제 1049호 |
| 개정 | 2002. | 11. | 20. | 훈령 제 1120호 |
| 개정 | 2003. | 9. | 5. | 훈령 제 1141호 |
| 개정 | 2003. | 11. | 10. | 훈령 제 1143호 |
| 개정 | 2005. | 12. | 22. | 훈령 제 1221호 |
| 개정 | 2007. | 2. | 28. | 훈령 제 1265호 (농림사업집행관리기본규정) |
| 개정 | 2008. | 8. | 1. | 훈령 제 39호 |
| 개정 | 2008. | 12. | 8. | 훈령 제 57호 |
| 개정 | 2008. | 12. | 24. | 훈령 제 69호 |
| 개정 | 2009. | 9. | 24. | 훈령 제 164호 |
| 개정 | 2010. | 12. | 6. | 훈령 제 230호 |
| 개정 | 2011. | 2. | 14. | 훈령 제 241호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8., 개정 2008.8.1>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8. 8.>

1. “농림수산사업자금”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국고, 기금, 자금,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관리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감독

- 권한이 있는 것(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8.8.1>
2. “지원대상자”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 및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농림사업실시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등(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업과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산업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원양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촌 및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어촌과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자금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2.11.20, 2008.8.1, 2010.12.6>
 3. “지원”이라 함은 융자, 보조, 투자, 출자, 출연, 기타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집행관리”라 함은 지원에 따른 사업자금의 배분,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의 결정, 수표의 발행, 지급, 융자에 따른 원금 및 이자의 수납 등의 행위(사업자금 상호간의 행위를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된 세무 사무 처리 절차 및 사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5. “사업자금관리자”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2008.8.1>
 6. “사업자금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 기관(직제상 과와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1998.3.9, 2008.8.1>
 7.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개정 1996.10.19, 2008.8.1>

8.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 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협중앙회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9. “개별규정”이라 함은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 외에 개별적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6.8.8.>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이 이 훈령에 위배되는 때에는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은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 다만,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6.8.8, 1997.10.29, 1999.11.8, 2007.2.28, 2008.8.1, 2008.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축산경영자금, 영어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7조의2,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8.8.1>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① 사업자금은 그 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과 이 훈령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지는 개별규정·사업시행지침 또는 예산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1997.10.29.>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의 연간 사업비외에 사업자가 추가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특정 기관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 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용자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집행
 <개정 1996.10.19, 1997.10.29, 2003.9.5.>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개정 1996.8.8, 1997.10.29.>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
 침에 정한 지원 비율(자부담 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④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0.29, 1999.11.8>

⑤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
 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등록증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은행통장사본 등 금융기관 거래자료(이하 “금융
 기관 거래자료”라 한다),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따라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 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신설
 2002.11.20, 개정 2005.12.22>

⑥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
 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
 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

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3, 개정 2003.11.10, 2005.12.22>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1.10>

⑦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증거 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 기관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7.23, 1999.11.8>

⑧ 제7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다. <신설 1998.7.23.>

⑨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용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1.8>

제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자금중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협중앙회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은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다른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정한 경우는 당해 특례 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의 예산을 담당하는 과(이하 "예산과"라 한다.)가 사업지원과의 신청을 받아 이를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② 예산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이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 1월 30일까지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은 이를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조(용자 조건의 결정) ① 용자 조건은 사업자금과가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 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와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는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 및 예산과와

협약하여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용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10.19, 1997.10.29.>

제7조(용자의 방법) ① 용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용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개정 1996.8.8, 1996.10.19,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재대여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2000.11.13, 2008.8.1>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신설 1997.10.29.>

제7조의2(용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는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에 용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를 사업주관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당해 시군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 시도”라 한다.)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관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등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등이 지원대상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년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년도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9.11.8>

제7조의3(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는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가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융자한도액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지원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④ 시군등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지원대상자 및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⑤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관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중 “시군등”은 “사업주관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개정 1999.11.8>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2010.12.6>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촉구 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0.12.6>

- 제8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로부터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 할 때에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확인한 당해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7.23, 2008.8.1, 2010.12.6, 2010.2.14>
-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7조의3제7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년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14>
-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회계년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3.9, 1998.7.23, 1999.11.8, 2010.2.14>
-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7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 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제9조 <삭제 1997. 10. 29.>

제1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2.19, 2002.11.20>

1.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의 요청을 받아 사업추진상황과 현저한 사정변경 등을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1.20>
2. 사업지원과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11.20>
3. 사업지원과는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당해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2.11.20>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주관

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 관리자는 사업자금과에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20>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중 당해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9>

1. 대여일부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한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19, 2002.11.20>

⑤ 사업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1997.10.29.>

제1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6.10.19, 1997.10.29.>

제12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삭제 1999. 11. 8>

제13조(보조금의 집행) ①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지급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보조금집행자”라 한다.)는 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 사업별로 교부 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 사업의 내용 및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원과가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 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집행자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하거나 교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개별규정 또는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단서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1997.10.29, 1998.7.23.〉

③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집행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제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1998.7.23.〉

⑤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준용 규정중 “융자한도액”은 “보조한도액”으로 하고, 제7조의2제3항중 “대출”은 “지급”으로 하며, 제7조의3제2항중 “농협중앙회등”을 삭제한다. 〈신설 1997.10.29.〉

제14조(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2.6〉

1. ~6. 〈삭제 2010.12.6〉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010.12.6〉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장비 등을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농림수산업과 관련되는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 목적 외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수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개정 1996.8.8, 1997.10.29, 2008.8.1.〉

3. 관계 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신설 2010.12.6〉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중도회수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등,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2010.12.6>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29, 1998.3.9, 2010.12.6>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개정 1998.7.23, 2010.12.6>

④ 대출취급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금융기관에 한한다)의 여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 대출 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3, 2010.12.6>

1.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신설 1998.7.23, 2010.12.6>

2. 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 사용의 개시일 또는 중도 회수사유 발생일(이하 “부당사용의 개시일 등”이라한다.) 다만, 부당 사용의 개시일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 사용사유 또는 중도회수사유(이하 “부당사용사유 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신설 1998.7.2,3, 2010.12.6>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신설 1998.7.23.>

⑤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제15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취급 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당사용 통지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시기로부터 10일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9, 1998.7.23, 1999.11.8, 2010.12.6>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당 사용 사실을 통지 받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 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의 상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대여금의 상환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6>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998.7.23, 1999.11.8, 2010.12.6>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율(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1.>

④ 보조금집행자는 지원대상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년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때에는 확인 일자·사유·금액 및 회수기한 등을 명기한 확인서를 당해인에게 통지하고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의 경우 제14조제2항 단서·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3항제1호·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하고, “대출”은 “보조”로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1999.11.8, 2010.12.6>

제16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인(생산자단체등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각 호의 기간(2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10.29, 1997.12.30, 1998.7.23, 2010.12.6>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② 2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년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 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8.7.23, 개정 2010.12.6>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개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0, 2008.8.1>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당사용사유 등을 확인한 날을 말한다.) <개정 1998.7.23, 2010.12.6>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집행자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확인한 날 <개정 2010.12.6>

⑥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신설 1998.7.23.> 다만,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지원과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때에는 당해 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 연월일, 지원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당해 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농업금융과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0, 1998.7.23, 2008.8.1>

제17조 <삭제 1997. 10. 29.>

제17조의 1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용자사업에 대하여 검사업무를 (재)농업정책자금관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8.12.8>

제18조(보칙) ①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등(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라서 설립된 것으로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회사, 기타 정부 사업(손익이 사업자금에 귀속되거나, 사업비의 전부를 지원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1996.8.8, 1997.10.29, 2000.11.13, 2008.8.1>

② 사업자금과는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0.29.>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 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신설 1997.10.29.>
2. 지원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신설 1997.10.29.>
-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와 보조금집행자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 내용을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서류를 지원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1997.10.29. 개정 2010.12.6>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8. 1.부터 시행하되, 제6조제2항과 부칙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6. 8. 1. 이후에 확인한 것부터,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개별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도 사업자금 예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1996.8.8.>
- ②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34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27조 및 제40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삭제한다.
- ③ **(다른 훈령의 개정)** 농림수산사업평가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제825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1996.8.8.>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 ④ **(경과조치)** 농특회계융자업무지침(금융 45160-5, 1995. 1. 13.)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1-나”중 “융자종결기한까지”를 삭제한다.
“Ⅱ-2-바”를 삭제한다.

- ⑤ (경과조치) 1996년도 사업시행지침에 사업주관기관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관기관에 대하여는 사업지원과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 <개정 1996.8.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10.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과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1997년도 사업자금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 조치)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Ⅲ-4-(2)” 단서중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농·수·축·임·삼협중앙회(회원조합 포함)인 경우 및 사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정하는”을 삭제한다.

“Ⅲ-4-(7)”중 “이자 회수 시기를 대출 기한 내에서”를 “이자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3조 (경과 조치) 산림개발기금융자업무지침(산림청 일정 51060-302, '96. 8. 19.)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2-(4)”중 “20%를 초과하고”를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4조 (다른 훈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2억 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100분의 20 이하”를 “100분의 20 미만”으로, “2억원 이하”를 “2억원 미만”으로 한다.

② 농수산물가격안정및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금과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지원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금과에 요구한다.”로 한다.

제5조(다른 훈령의 개정) 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100분의 20을 초과하고”를 “100분의 20 이상이고”로 하고 “2억원을 초과하는”을 “2억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칙<개정 1997.10.29.>

① (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 조치) 농특회계용자업무지침(금융 51060-145, '96. 8. 1.)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4-(4)”중 “- 이월된 사업의 용자 예산의 경우 계상 년도는 당초 계상 년도가 아니고 이월된 연도로 본다.”를 삭제한다.

부칙<개정 1997.12.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개정 1998.3.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7.23.>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12.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98회계년도의 대여된 융자금은 제10조제1항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3월 31일까지 대출할 수 있다.

부칙 <개정 1999.11.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12조에 의한 신규사업에 대한 여신관리계좌 운영은 1999.12.31일까지 운영하고, 2000년.1.1부터 폐지한다. 다만, 1999.12.31일까지 여신관리계좌운영은 농림부 훈령967호('98.12.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운영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이 여신관리계좌에 입금된 때에는 예산에 계상된 연도의 다음 연도말까지 여신관리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0.11.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11.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1항 각 호의 대출마감일 연장기한 및 재연장기한은 2002년 이후 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3.9.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1.10.>

이 훈령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2.22.>

이 훈령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2.28.>

이 훈령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8.1.>

이 훈령은 2008. 8. 1.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8.>

이 훈령은 2008. 12. 8.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훈령 제4조 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은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유보하되, 2009년도 자부담금 집행은 공사진도에 따라 국고분 집행시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0.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1.2.1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제6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발신 : 사업주관기관

| | | | | |
|---------------------------------|------|--------------|------|-----|
| 접수 확인 일 20 . : : | | 소속 및 부서 | 직 급 | 성 명 |
| | 확인자 | ○○시·군·자치구○○과 | ○○○○ | ○○○ |
| | 피확인자 | ○○조합 ○○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명 | 주 소 | 성 명 | 연 간 예산액 (천원) | 사업자금 과의 융자 한도액 배정일 | 사업 자원 과의 융자 한도액 배분일 | 시· 도의 융자 한도액 재 배분일 | 대출예정금액 확 정 | |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 | |
|-------|-----|-----|--------------------|--------------------------------|------------------------------------|-----------------------------------|---------------|------------------|---------------|---------------|------|
| | | | | | | | 확정일 | 확정 금액 (천원) | 금 액 (천원) | 반납 기한 | 사 유 |
| ○○○사업 | | 김삿갓 | 10,000,000 | '98. 5.20. | '98. 5.21. | '98. 5.22. | '98. 5.23. | 5,000,000 | 5,000,000 | '98. 7.3. | 사업포기 |
| ○○○사업 | | 김개동 | 500,000 | '98. 7.21. | '98. 7.22. | '98. 7.23. | '98. 7.24. | 100,000 | 80,000 | '98. 10.5. | 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남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주관기관인 경우만
 기재

[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 | | | | | |
|--|--------|-------------|-----------------------|----|-----|
| 주 소 | 시 도 | 시 군 구 | 읍 면 동 | 번지 | 통 반 |
| 성 명 또는 명 칭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
| <p>20〇〇. 〇〇. 〇〇.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된 바 있는 〇〇〇〇 사업의 융자한도액 〇〇,〇〇〇,〇〇〇천원중 〇〇,〇〇〇,〇〇〇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사 업 주 관 기 관 의 장) (직인)</p> | | | | | |

275-01611일
1997. 11. 7. 승인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1

발행 · 농림수산식품부(자원환경과)

전화 · 02)589-4604

팩스 · 02)589-1700

디자인/인쇄 · 초이스디자인 02)2275-2633